

---

# 2021회계연도 사업설명자료

---

2021. 1.

**해양경찰청**

사 업 명
토지대여료 (51-51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토지대여료	18	13	13	13	18	5	38.4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 국유재산(구내식당 토지 등) 사용료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7	8	10	18

사 업 명
건물대여료 (51-5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건물대여료	114	212	212	215	318	106	50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 2. 세입 개요

- 해양경찰청 소속관서 소관 국유재산(건물) 대여료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37	367	473	281

사 업 명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관유물대여료	5	6	6	5	5	△1	△16.7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 2. 세입 개요

- 기타 국유재산(관유물) 사용료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	5	4	5

사 업 명
기타재산수입 (54-54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기타재산수입	16	26	26	26	26	-	-

**1.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
  - ①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보관금이나 이자가 있을 때에는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보관금을 환급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보관금명, 보관금액 등 국고귀속 대상 보관금에 관한 사항
    2. 국고귀속 예정일
    3. 환급절차 등 환급에 대한 안내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② 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및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43	9	19	16

사 업 명
벌금및과료 (56-56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벌금및과료	1	20	20	2	3	△17	△85

### 1. 법적 근거

○ 경범죄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 세입 개요

- 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벌금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등의 수입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21	6	1	1

사 업 명
과태료 (56-563)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과태료	188	182	182	185	189	7	3.8

### 1.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7.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
  8.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를 위반하여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10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 10의3. 제38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 검사를 한 자
  - 10의4.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11.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11의2. 제4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수상레저사업자
  - 1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수상레저사업자

12. 제50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수상레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및 폐기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0. 제8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1.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2.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작동한 자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작동한 자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물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건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5. 제7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제7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9.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7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의 최고를 받고 그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수상레저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해사안전법 제110조(과태료)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확인·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7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2항(제5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5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불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5의2.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또는 호출응답용

관계통신을 청취·응답하지 아니한 자

15의3.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계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

15의6. 제41조의3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19. 제49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2.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96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78조,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4.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5. 제106조제17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선박의 입찰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자

22.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진술이나 서류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보고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제20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자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4. 제13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어선법 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제3호·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2. 세입 개요

- 법 집행기관인 각 해양경찰서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 기초질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등의 수입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65	212	168	188

사 업 명
징계부과금 (56-564)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징계부과금	16	15	15	15	19	4	26.7

1.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⑤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징계부가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② 징계위원회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 등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행,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 2. 세입 개요

- 공무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수수(授受), 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등의 5배 이내 징계부과금을 부과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	24	16	16

사 업 명
과징금 (56-565)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과징금	55	84	84	84	84	-	-

1. 법적 근거

○ 수산업법 시행령 제82조(과징금의 용도)

- ① 행정관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건조·수리
  2.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지도·단속·수사 담당공무원의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4. 어업지도선 및 경비함정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 경비
  5. 불법어업지도·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6.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한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의 관리 및 처리 비용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관청은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1. 제1항제3호의 수당 및 수사비: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제1항제5호의 보조금 중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100분의 30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의2(과징금 처분)

-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2. 세입 개요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징금 등
  - 수산관계법령 위반 단속 보조금(관할지자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과징금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59	80	84	55

사 업 명
변상금 (57-57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변상금	8,954	1,017	1,017	1,020	2,679	1,662	163.4

1. 법적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안의 자갈·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름이 하나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해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2.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 이 경우 기름이 둘 이상의 시·도지사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할 시·도지사로 한다.
    - 3. 군사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한 방제조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
  - ③ 해양경찰청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방제에 사용되는 자재·약제,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등기사항증명서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2. 세입 개요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해양오염 사고 시 국가가 선 조치에 따른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등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210	1,201	2,679	8,954

사 업 명
위약금 (57-57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위약금	349	737	737	740	740	3	0.4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6조(지체상금)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금으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체상금의 예산액 추계가 어려운 실정임.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480	887	337	349

사 업 명
가산금 (58-58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가산금	3	4	4	4	4	-	-

### 1.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중앙관서의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2. 세입 개요

- 납부의무 불이행(과태료 미납 등)에 따른 가산·연체금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4	1	4	3

사 업 명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경상이전수입	776	1,183	1,183	1,190	1,240	57	4.8

1. 법적 근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2. 세입 개요

- 국고보조 및 위탁사업 정산 집행잔액, 과오지급금 회수, 호봉재확정 관련 급여지급금 환수 등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870	1,101	1,842	776

사 업 명
면허료및수수료 (65-65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면허료및수수료	453	327	327	350	427	100	30.6

1. 법적 근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1만원
    2. 경사 이상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7천원
    3.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7천원
    4.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5천원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응시수수료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수수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 등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받으려는 자
    - 5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5의3. 제31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6.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검사를 받으려는 자
- 7. 제39조와 제42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2의2. 제37조제6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 3.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수상레저기구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의 수입으로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수수료 등)
      -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해양환경 측정기기의 형식승인·검정, 자재·약제의 형식승인·검정 및 형식승인대상의 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성능시험 및 검정에 대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32와 같다.
      - ②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수입인지, 전자화폐,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현금, 전자화폐,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 2. 세입 개요

- 경찰공무원등 채용시험 인터넷접수 응시 수수료
- 수상레저 면허, 수상구조사 관련 응시료, 갱신료 등 수수료
-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성능시험 및 검정수수료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34	347	300	453

사 업 명
기타잡수입 (69-691)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잡수입	1,080	812	812	812	835	23	2.8

### 1.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6조(매각)
  -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2. 세입 개요

- 물품관리법에 근거한 불용결정품 매각대금(고철, 폐유 등)
-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기초체력단련장 이용료)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637	736	689	1,080

사 업 명
기계기구매각대 (71-7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계기구매각대	20	25	25	25	25	-	-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2. 세입 개요

- 용도 폐지된 공용차량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매각대금(차량, 불용물품 등)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15	10	19	20

사 업 명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2)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

목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74	273	273	260	260	△13	△4.8

### 1.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제40조(용도폐지)

-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유재산법제48조(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문화시설·공원 등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특별회계나 기금 소관 재산으로 그 회계나 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 국유재산법제50조(매각대금의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2. 세입 개요

- 용도 폐지된 공용차량 등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중인 인터넷 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매각대금(경비함정 등)

## 3. 최근 4년간 수납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납액	38	225	194	274

사 업 명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3001-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6,612	4,649	4,649	5,382	4,686	37	0.8

### 4. 사업목적

- (연안안전활동지원) 연안사고 예방과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파출소·출장소 구조물품 구입 및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 지원
- (연안교통안전관리)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동점검단 운영 등 연안교통질서 확립
- (연안안전관리)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 (스마트추진단운영)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효율적 현장 맞춤형 장비개발로 해양재난 안전 현장대응력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연안안전지킴이) 민·관·지역공동체 협업 운영을 통해 연안안전관리시스템 마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등
- 해사안전법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항·입항 신고)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 어선법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 위촉), 同법 시행규칙 제11조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

### ② 추진경위

- '05. 4월 속초 황만호 월선 관련 음주측정 장비 보강(음주운항사고 사전예방)
- V-PASS 관련 '06. 12월부터 인천·속초 지역에서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시범운영  
국회 국정감사 정책제언, 국민권익위 및 합참 확대 구축 요청
- '14. 5월 「연안사고예방법」 제정에 따른 연안 안전관리
- '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관련 대통령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 지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파출소(구조거점 포함)·출장소 331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구입계획 수립	해양경찰청(사업부서)	구조물품 확보 계획 수립
② 조달구매 요청	지방청·해경서(경리부서)	국가계약법에 의한 구매 요청
③ 입찰공고	조달청	타당성 조사후 입찰공고 게시
④ 계약	지방청·해경서(경리부서)	낙찰자 적합성평가 후 계약 진행
⑤ 납품	사업자	납품
⑥ 배정 및 운용	경찰서, 파출소·출장소(소속관서)	물품관리법에 의한 검사·검수 진행 후 물품 배정·운용

사 업 명
수색구조역량강화 (300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색구조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수색구조역량강화	4,825	8,627	8,509	17,531	9,057	548	6.4

**4. 사업목적**

- (구조장비 확충)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구조대 등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임무수행을 위한 구조장비 구매·도입을 지원하는 것임
- (구조역량 강화) 해양경찰 구조세력의 신속대응·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수색구조합동훈련, 구조장비 유지보수 등을 통해 구조 전문성 확보하고자 함
- (연안 초동대응 훈련) 중소형함정·파출소 직원 대상 연안사고 초동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실시 및 장비 구매·도입 지원하는 것임
- (민간구조 협력) 넓은 바다에서 해경세력만으로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한계 발생, 민간해양구조대 등 민간구조자원의 지원을 통해 구조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임
- (수색구조 운영) 중앙·광역 구조본부, 수색구조 사무실·해양경찰구조대, 중앙

해양특수구조단 등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지원하는 것임

- (중특단 시설운영)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 준공에 따른 훈련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하는 것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제29조(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 등),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제30조의2(수상구조사), 제30조의12(심해 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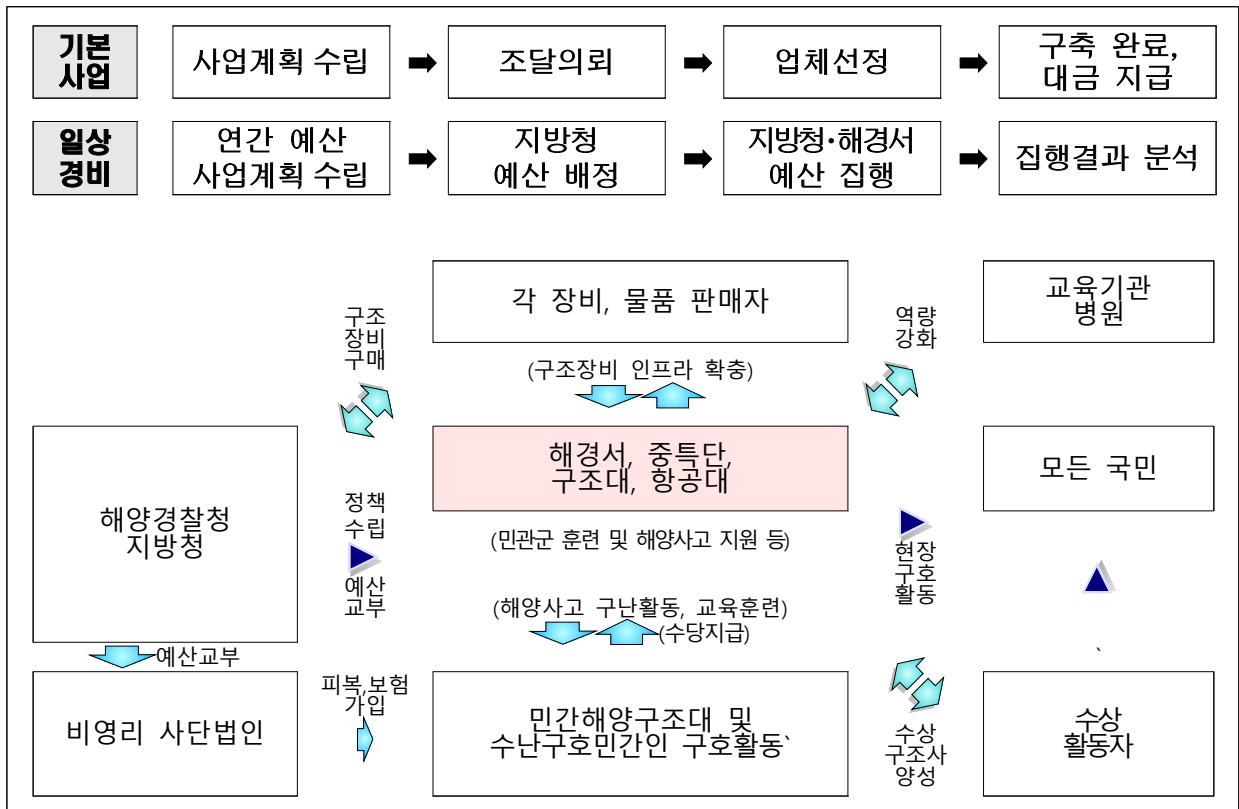
- (수색구조역량강화) 해양현장의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진 해양사고 대응체계 구축
- (정부조직법 공포·시행) 국민안전처장관 소속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공식 출범 ('14. 11. 19.)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지역대(동해·서해) 신설 ('15. 11. 30.)
- (수상구조법 개정) 민간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인증 전문 자격제도 “수상구조사” 신설('15. 7. 24.)
- (안전혁신마스터플랜) 54차 국무총리 주제로 심의확정(해경 현장 대응능력 및 인프라 확충)
- (인접국간 협력) 인접국간 수색·구조 훈련 등 국제 협력 강화로 재외 국민 보호
- (SAR 협약 : Search and Rescue) 수색 및 구조의 협력과 조정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권장
- (SOLAS 협약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 인명 안전 협약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비영리사단법인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비영리 사단법인	100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수상레저관리 (3001-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1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활동	수상레저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수상레저관리	868	969	969	1,304	1,304	335	34.6

### 4. 사업목적

-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수상레저스포츠 진흥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의 체계적인 관리
-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수상레저 활동자 및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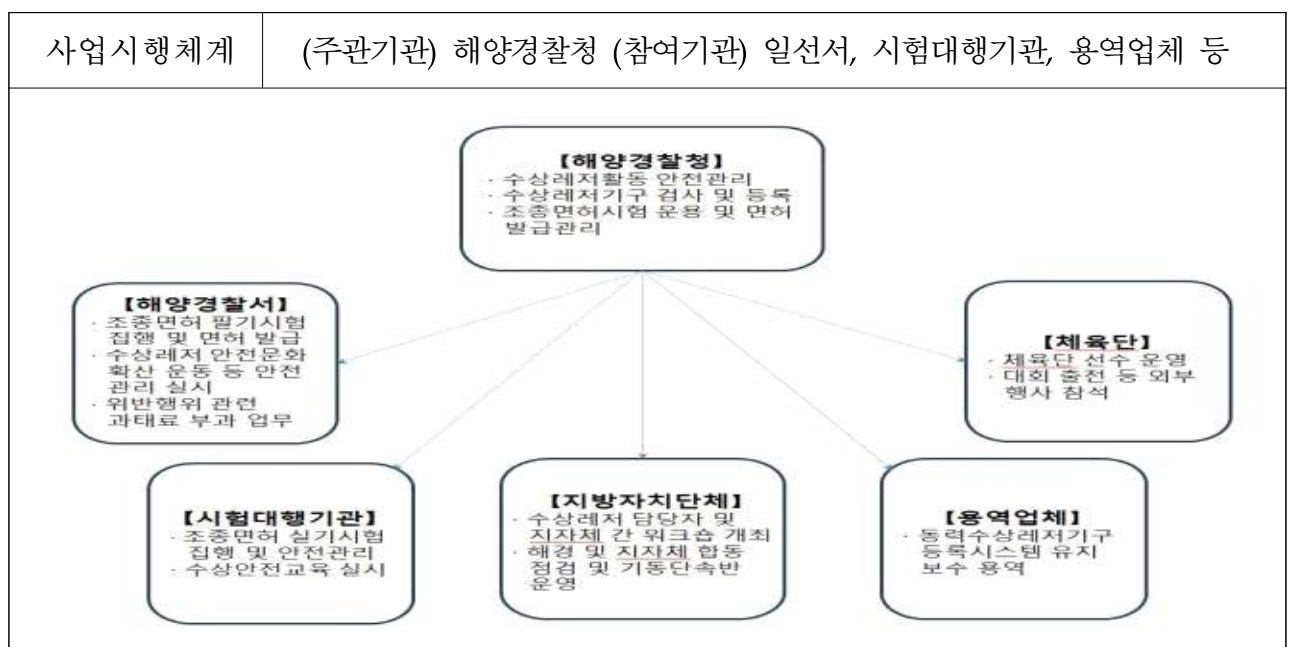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조(목적), 제4조(조종면허), 제29조의2(안전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② 추진경위
  -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정(법률 제5910호, '99.2.8)

- \* '00년도 조종면허시험 시행, '06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 보험의 무가입, '08년도 시도지사 및 해경서장에게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법 일부 개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양경찰청 및 소속 24개 관서 조종면허시험 및 안전관리 업무
  - 서울·경기 등 총 32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실기시험 집행 및 안전교육 실시
  - 조종면허 PC시험장 20개소 상시 조종면허 필기시험 집행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현황 : 31,396대
  - 수상레저사업장 현황 : 99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연안구조장비도입 (3002-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0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연안구조장비도입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연안구조장비도입	19,456	13,765	15,985	6,780	3,900	△12,085	△75.6

**4. 사업목적**

- (연안구조정 도입) 「週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양여가 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한 해양활동 보장 및 신속한 해상재난 구조능력 제고를 위한 연안해역 구조장비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편성·운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년 연안해역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 '05년 제33회 국무회의 시 대통령 보고 및 사업 추진
  - '14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대응능력 강화 과제
  - '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관련 대통령 해경의 현장 구조역량 강화 지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파출소 96개소, 출장소 235개소 등 연안구조장비 확보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건조 계획 수립	해양경찰청	연안구조정 도입계획 수립
② 건조 계약 추진	조달청	선박 건조 및 감리사 선정
③ 선박 건조	조선소	연안구조정 사업 추진
④ 건조 감리	감리사	연안구조정 건조 사업 감리
⑤ 연안구조정 인도·운용	해양경찰청(해경서, 파출소)	연안구조정 운용

사 업 명
VTS구축운영 (300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1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VTS구축운영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VTS구축운영	15,405	30,331	24,611	36,503	29,919	5,308	21.6

### 4. 사업목적

- 항만 및 연안해역의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선박교통관제 (VT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VTS구축) VTS 시스템 미설치 항만 및 연안 해역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센터,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
  - (VTS확충) 레이더 음영구역이나 탐지범위 밖 해역 등 관제취약지역에 시설장비를 증설하고 인근 관제센터에서 확대 운영하는 사업
  - (VTS개량) 내용연수가 경과한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노후되고 성능이 저하된 시설장비를 현대식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
  - (VTS유지관리) 전국 20개 VTS의 안정적인 관제운영 및 시설장비 성능유지를 위해 유지보수비, 운영비,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선박교통관제의 시행)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1조(관제시설의 설치·관리)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 ② 추진경위

- 부총리 주재 해양오염방지대책 회의에서 '해양교통관제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협의'(90.8.2)
- 포항항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설치, 운영개시('93.12)
  - \* ('93)포항, ('96)여수(광양)·울산, ('98)부산·인천·마산·대산·평택, ('99)동해·군산·목포·제주, ('04)완도, ('05)부산신항, ('06)진도연안, ('11)경인, ('12)여수연안, ('14)통영연안, ('18)경인·태안연안 등 20개 VTS 구축
- 총리 주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양교통관제시스템 설치계획' 확정('94.2.8)
- '해양오염종합방지대책' 중점추진 과제('95.10, 당정회의, 총리실)
- 총리실,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를 '특정과제'로 선정, 평가실시('08.3~7)
- 연안VTS 확대 구축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 舊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결정('08.7)
- 해양경찰청, '연안VTS 확대구축 중장기계획' 수립('12.2)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연안·항만VTS 업무를 국민안전처로 통합('14.11.19)
- 해양경찰청, '연안·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 통합구축 추진계획' 수립('17.7)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연안·항만VTS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17.7.26)
- 해양수산부 소속 VTS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19.10.29)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정('19.12.3)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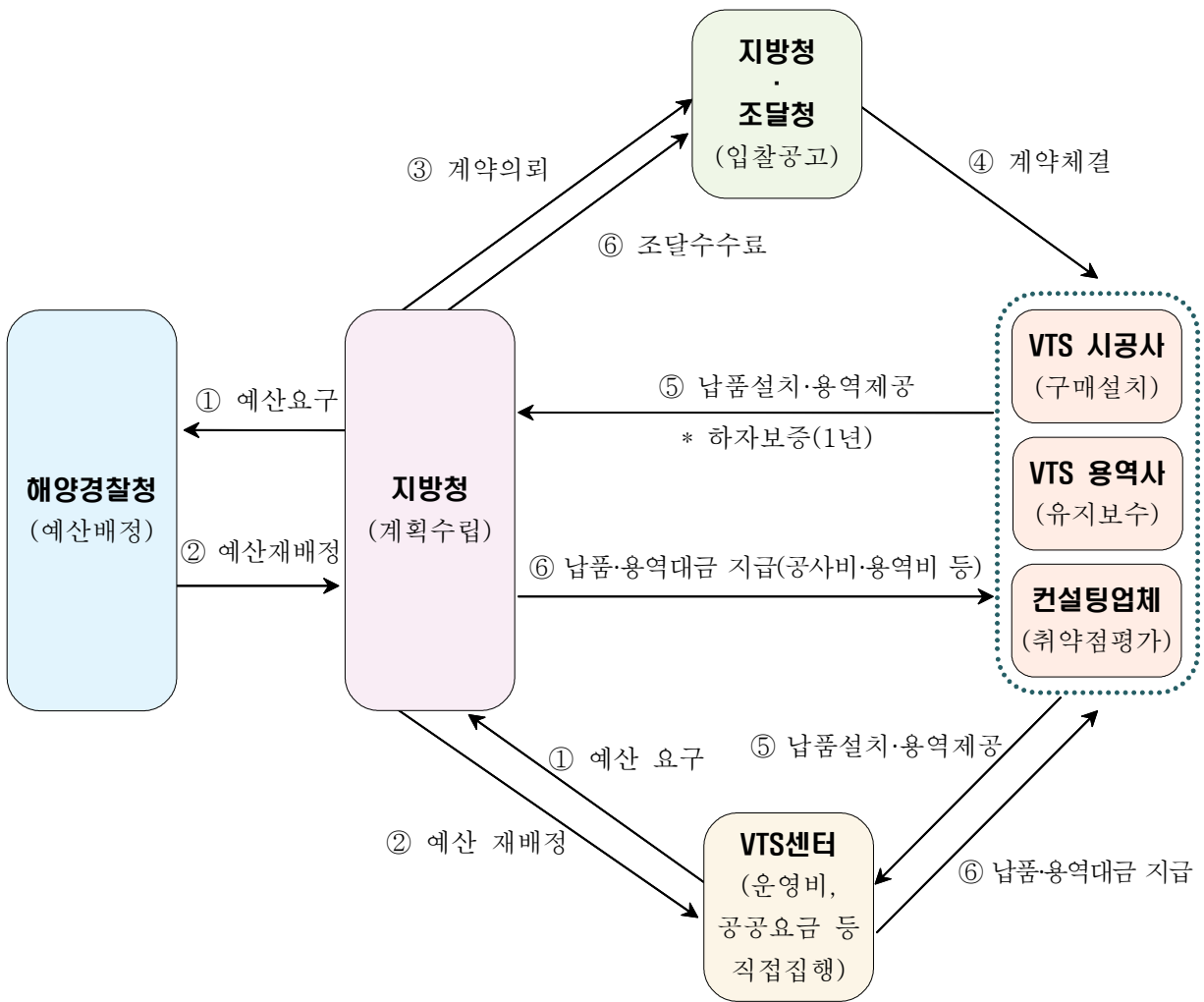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전국 15개 항만 및 5개 연안 해역에 레이더, 운영시스템, 통신장비 등 선박교통관제(VTS)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선박운항자, 도선사, 해운회사 등 VTS 이용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① 예산요구(지방해양경찰청) → ② 예산검토 및 배정(해양경찰청) → ③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발주(지방청) → ④ 입찰 및 계약체결(지방청 또는 조달청)  
 → ⑤ 장비구매 및 설치공사 → ⑥ 공사완공 및 대금지급 → ⑦ VTS 시스템  
 구축운영

국가재정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정보통신공사법 등  
국가계약법



사 업 명
통신위성장비관리 (3002-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2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통신위성장비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통신위성장비관리	15,844	18,416	18,416	24,989	17,531	△885	△4.8

### 4. 사업목적

- 통신·항해장비의 유지 보수와 노후 통신장비 교체, 부족장비 보강으로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지원하여 해상치안 업무의 효율성 향상
- 경비함정 통신망을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위성통신 방식으로 개선하여 모든 해역 해상경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원
- 신속한 수색구조 임무수행을 위한 조난위성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난구조법 제32조 및 국제협약에 의한 조난통신 수신  
해상구조조정본부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 청취하여야 함
- 선박안전법 제29조(무선설비) 및 물품관리법 제23조(물품의 정비)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조난통신 청취 및 수신을 위해 '96년부터 조난통신시설을 운영
- 원거리 해역에서 경비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통신망 구축 필요로 '05년 7월 위성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적 추진
- '16년 국제안전통신센터,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구축하여 해상조난신호 처리
- '20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으로 전 구조기관의 지휘통신망 일원화 및 신속한 상황전파로 성공적인 구조업무 지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소요판단 → 세부추진계획 작성 → 일상감사(1억이상) → 계약의뢰→  
계약체결 및 시공 → 검사 및 완공(구매완료)

사 업 명
유도선안전관리강화 (3002-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000	3002	303
명칭	구조안전활동	구조안전인프라	유도선안전관리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유도선안전관리강화	-	611	611	321	171	△440	△72.0

### 4. 사업목적

- 노후 유·도선 신규건조 시 사업자에게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 선박 현대화를 통한 해양안전기반 구축 및 해양사고 예방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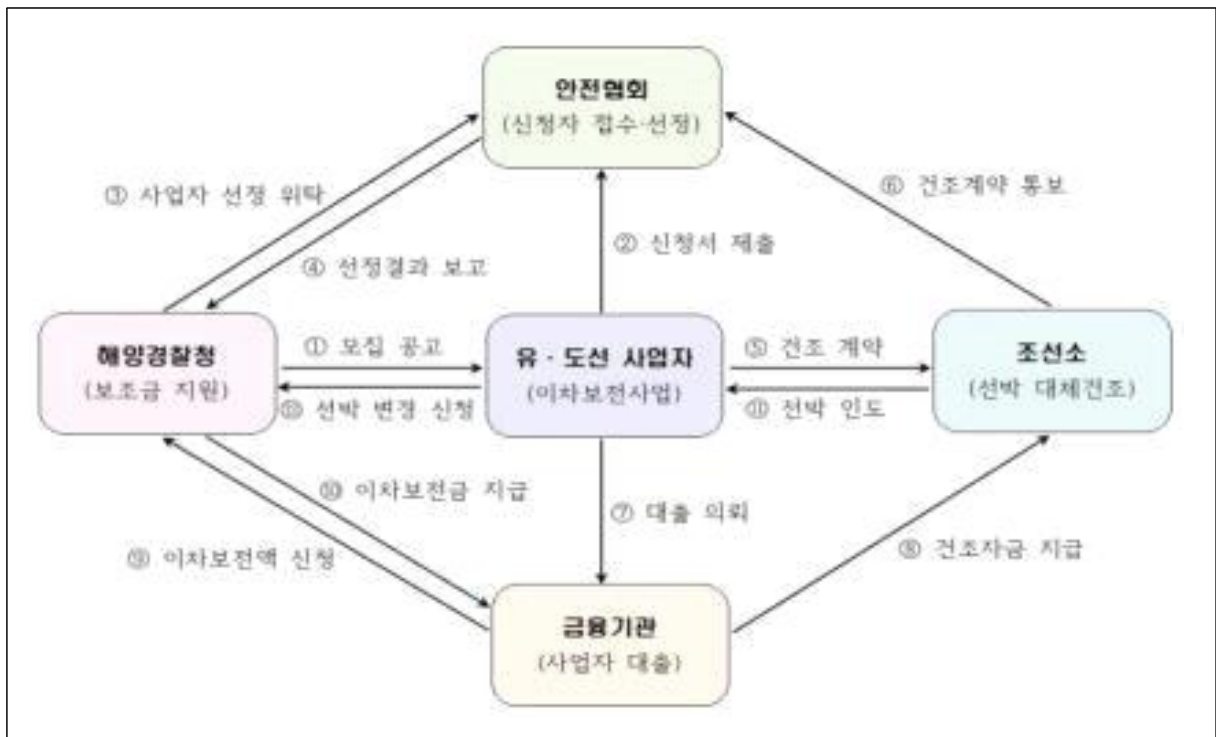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 ② 추진경위
  - 유·도선 선령기준 제도 도입('16.2.3 시행)에 따라, 최대 30년 선박사용
    - \* (선령기준) 원칙 20년 이하 → 21~25년 연장(목선·FRP) → 26~30년 연장(강선·알루미늄)
  - 법 시행 前 면허선박은 7년 간 적용 유예(선령무관 2023.2.3.까지 사용), 적용 유예가 끝나는 2023. 2. 4.부터 다수선박 사용불가\*

- \* 2020~2024년까지 총 140척(유선 116, 도선 24)이 제한대상
- 해수면 유·도선사업자의 상당수가 영세업체로서 경과규정 적용 만료 도래 시 다수 유도선이 선령초과로 운항정지 대상이 되어 업계 혼란 예상
- 이에 따른 사업자 대체건조 계획 시 업계 부담 완화하고 해수면 유·도선 이용객의 차질없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예산 지원 방식(해수부)을 기초로 행안부(내수면)와 공동으로 정부지원 대책(이차보전사업) 마련 추진 중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노후 유도선(140척) 신규건조 용자 금리 지원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유도선 영세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함정건조 (3101-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함정건조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함정건조	122,718	165,400	170,500	141,933	124,843	△45,657	△26.8

### 4. 사업목적

-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 함정 신규증강 및 내구연한 초과 함정 대체건조, 함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 ※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역량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 경찰장구와 각종 장비·시설(구조·구난·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운영계획을 효과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합정 내구연한에 관한 규칙 제4조(합정 내구연한의 기준) 합정 내구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선 : 선령 20년, 2. F.R.P선 및 알루미늄선 : 선령 15년

② 추진경위

- ('03년~'07년) 소형정 57척 대체건조
- ('06년~'10년) 중·대형 경비함 31척 대체건조 [선박펀드]
- ('11. 12월) 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대형합정 6척(완료 3, 진행 1, 계획 2) 및 고속단정 18대 교체 계획 반영
- ('14. 12월)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당·정·청 협의회)에 따라 대형 합정 탑재 고속단정 30대 교체 계획 반영
- ('16년) 조선경기 활성화를 위한 3000톤 경비함 1척 등 19척 추경사업 반영
- ('19년) 북동어장(대화퇴) 전담 경비함 1척 반영
- ('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조선업 수주부진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 신규물량 지원, 3000톤 경비함 1척 등 7척 추경사업 반영

국정과제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역량 강화  
 실천과제 56-3 해경 역할재정립 및 해양주권수호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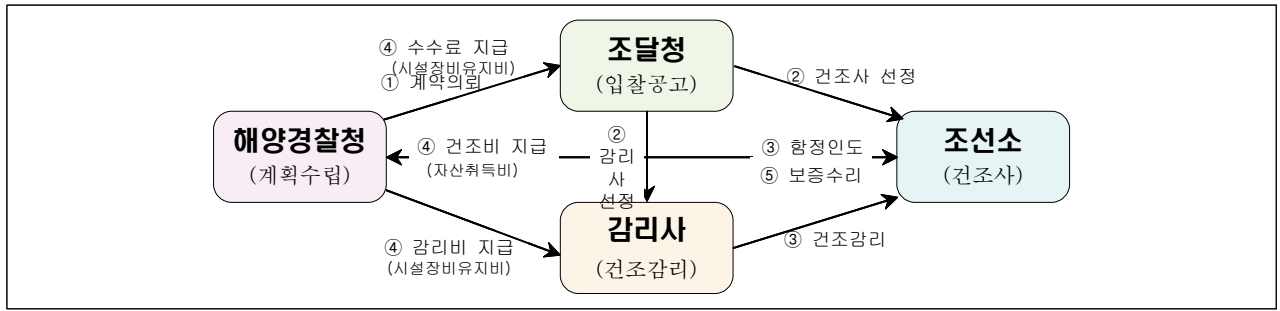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신규증강 및 노후대체('20. 8월 기준)

구분	계	신규증강	노후대체(24척)					고속단정
		3000톤	3000톤	1500톤	100톤	형기정	예인정	
척수	44척	2척	1척	1척	11척	8척	3척	18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항공기도입 (3101-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1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장비도입	항공기도입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항공기도입	21,806	31,464	31,464	69,597	46,759	15,295	48.6

### 4. 사업목적

- 해양재난사고 발생시 골든타임(1시간) 내 신속한 상황대응 체제 유지 등 구난체계 구축
- 독도·이어도 및 가상 EEZ해역까지 실질적인 해·공 입체적 경비에 필요한 항공세력 확보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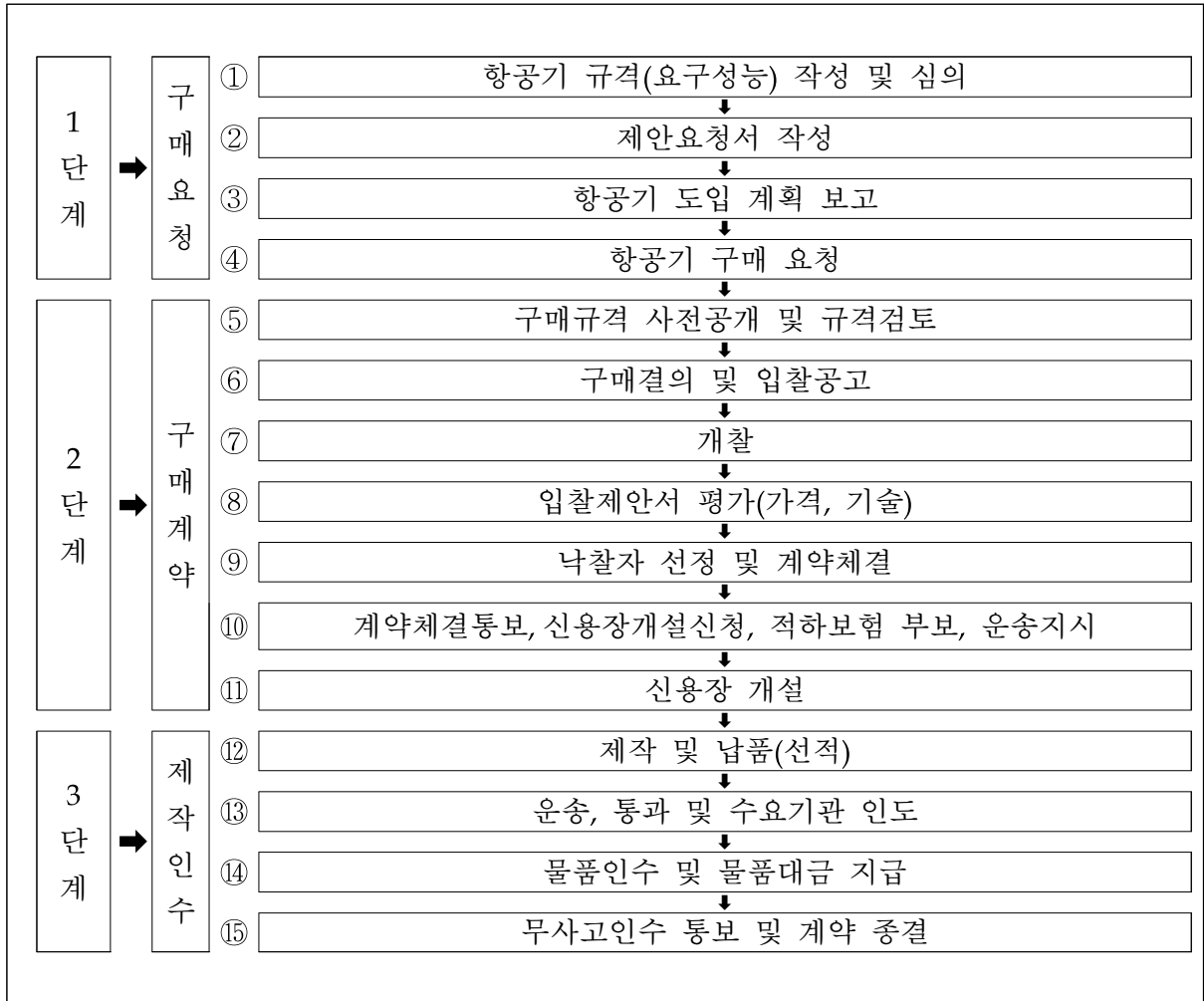
- 해양경비법 제2조(정의)
  -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3조(수난구조의 관할)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5조(재난대비 능력보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장 제56조(해상에서의 긴급구조)
  -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조난사고의 긴급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세기 해상치안 역량강화를 위한 최적 항공기 도입방안 연구용역('07. 8월)
  - 해양사고 대응 및 해상안전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수립」('15. 12월)
  - 노후헬기 수명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17. 6월)
  - 유·무인항공기 도입 및 운영 발전 방안 연구용역('19.12월)
  - 극우단체 독도 상륙기도, 해양탐사선 해저지형 탐사 시도 저지 등 독도주권 수호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항공기 45대 도입 목표(2035년도까지 발주기준)
  - \* 보유 25대, 진행 3대, 추가계획 17대(비행기 5, 헬기 1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도서민, 해양레저활동자, 해양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02 - 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경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경비대테러역량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경비대테러역량강화	6,626	6,301	6,201	11,875	9,156	2,955	47.7

### 4. 사업목적

- 독도·이어도 및 EEZ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체계 구축
- 어업자원 보호를 위한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활동 강화
- 해상테러 예방·진압, 해상경호임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등 대테러 역량 강화 및 해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특공대 운영
- 대북관련 업무 및 국가위기관리, 통합방위 등 국가 보위 업무수행
- 각종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제 확립을 위한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상황실 운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비법(법률 제14839호) 제 7조 (해양경비활동의 범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법률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 테러방지법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② 추진경위

- '96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후 인접국과 시급한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업협정 체결('99년 한·일, '01년 한·중)
- '01년 특수구조대 창설 후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재난에 적극 대응
- '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부터 해상경호의 중요성 인식, 해양경찰만의 독자적인 해상경호 체계 구축·운영
- '08. 10. 2. 대통령 지시사항 “중국의 불법조업어선 단속과 관련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는 단속방법에 대한 연구의 검토 및 해경의 장비보완, 사기를 진작하도록 할 것”
- '11. 12월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 종합대책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1. 12월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경찰관 안전확보 지시, 장비 인력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 강구”
- '16. 10월 정부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 발표
- '18. 2월 중국 해양관측 발견 이후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경비체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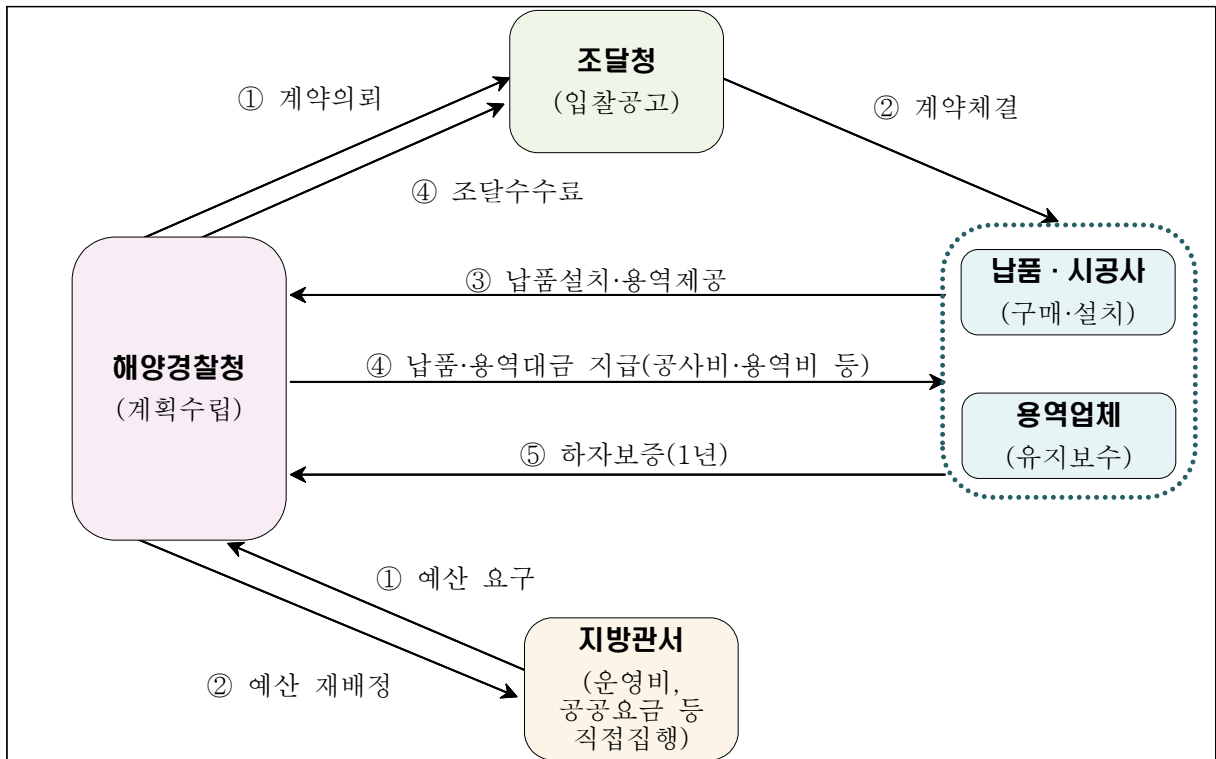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경비과 26개소 (본청 1, 지방청 5, 경찰서 19, 서특단 1), 경비함정

352척 특공대 5개소 (중부, 서해, 남해, 동해, 제주), 상황실 26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범죄수사활동 (3102-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범죄수사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범죄수사활동	4,903	5,455	5,393	6,476	5,969	576	10.7

### 4. 사업목적

- (범죄수사지원) 사채 부검비, 압수물 보관비, 통역비 등 해상범죄 단속 목적 수사·형사 경찰관 수사활동 지원 목적 사건수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 경비 등 집행
- (장비·시설 확보 및 유지) 지능·광역화 되어가는 해상범죄 특성에 대비하고,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수사기법 연구·개발 및 디지털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장비 보강, 시설 유지·보수와 유치장, 조사실 환경 조성 등에 따른 피의자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 (수사권 조정 수사환경개선)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제도 변경에 대비한 경찰수사환경을 개선하여 조사대상자 인권보호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질 향상
- (기타직 인건비) 수사지원업무 사무보조 목적 고용된 무기계약직 인건비 집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형사소송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③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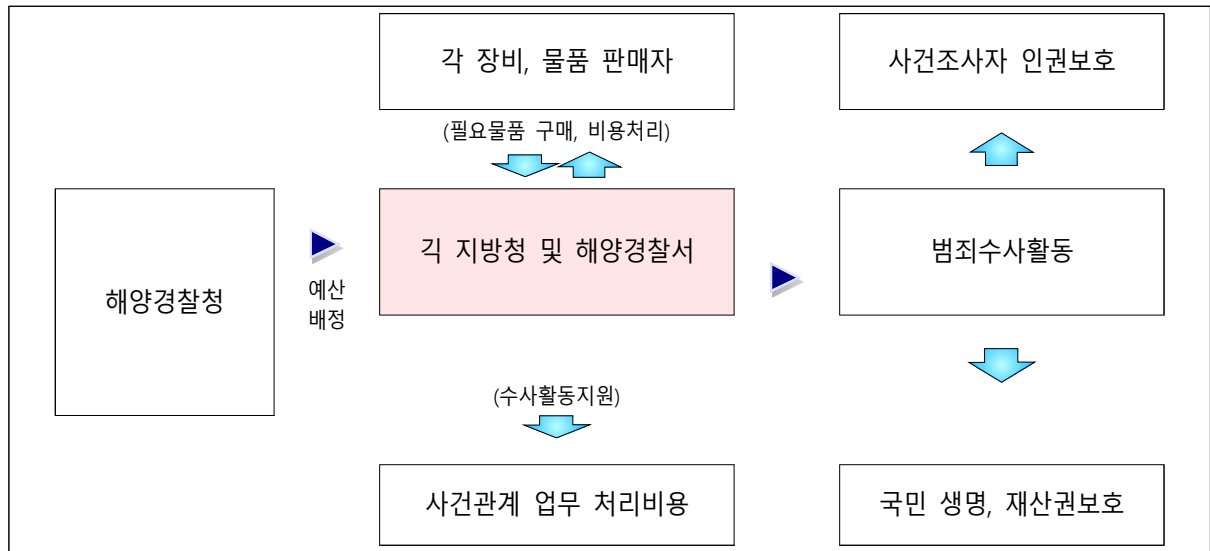
- '62. 05. 0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69. 09. 20 해양경찰대 정보수사과 신설
- '08. 12. 23 형사과(형사마약계, 광역수사팀, 마약반) 신설
- '11. 01. 24 수사과 내 과학수사계 신설
- '14. 11. 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국 해상수사정보과(수사계, 형사계, 정보계, 외사계, 보안계)로 조직개편
- '17. 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수사과(수사계, 과학수사계)로 조직 개편
- '20. 7. 21.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과학수사팀 신설
- 지속적 범죄수사활동 사업으로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활동 전개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양경찰청 소속 25개 관서 內 수사·형사 업무 지원 및 유치장 관리유지, 수사장비 관리 및 범죄수사활동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국제외사활동 (3102-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	-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경비수사활동지원	국제외사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외사활동	1,385	1,760	1,760	1,467	1,332	△428	△24.3

### 4. 사업목적

-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를 통한 불법조업 근절 및 해양공권력확립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비집행
- (외사활동지원) 지능·광역화 되어가는 조직적 밀입국, 마약 밀반입 등, 국제 해양 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 밀항단속법 제3조 (밀항, 이선 등)

- 영해및접속수역법 제5조 (불법어로)
-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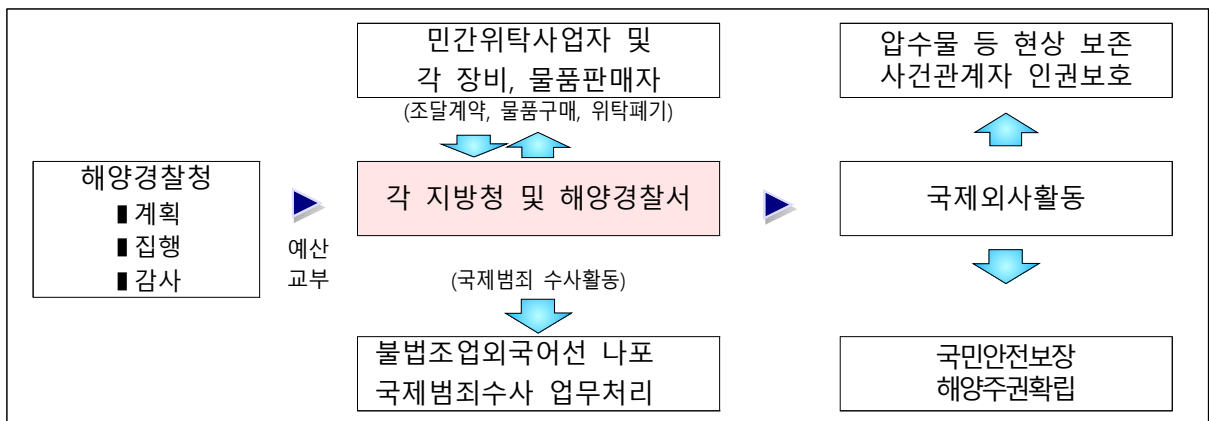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62. 5. 5. 범죄수사권 부여(범죄수사활동 실시)
- '08. 3.10. 정보수사국 외사과 신설
- '14.11.19.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신설(해상수사정보과 외사계)
- '16. 1.18. 지방본부 국제범죄수사대 신설
- '17. 7.26.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신설(수사정보국 외사과)
-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 수사활동 및 불법외국어선 사법처리하여 국민의 안전보장과 해양치안의 확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함정정비유지 (3103-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함정정비유지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함정정비유지	13,131	12,028	12,028	15,312	12,398	370	3.1

### 4. 사업목적

-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바지류 운용에 필요한 정비유지와 함정 계류시설 개·보수 관리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법률 제15624호) 제43조(해양수산부) 2항, 3항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호) 제15조(장비기술국) 3항
- 국유재산법(법률 제15425호)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1항
- 물품관리법(법률 제9516호) 제23조(물품의 정비) 1항, 2항

② 추진경위

- 관할구역을 완벽히 경비할 수 있는 함정·연안인명구조장비·바지류의 적기 수리지원으로 국가주권과 해양경비 역량 강화에 기여
- 경비함정의 지속적인 성능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함정정비유지, 노후장비 교체, 비품확보 등 체계적인 재정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흐름도	주기	주요내용	비고
예산확보	년	○ 장비관리 중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요구 및 확보	본청 주관
↓			
연간계획 수립	년	○ 함정정비 등 정비·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 전용부두 시설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 통합장비시스템 유지를 위한 소요예산 ○ 기타 정비업무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본청 수립
↓			
연간계획 의거 소요예산 재배정	분기	○ 연간계획 의거 함정정비유지 예산 소속기관 재배정	소속기관 재배정
↓			
응급수리 관련 소요예산 파악	수시	○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소요 예산 파악	소속기관 실무자 협의
↓			
응급수리 관련 지원범위 결정	년	○ 해경 정비창, 해군 정비창 응급수리 입찰지원 여부확인 ○ 함정정비유지 예산 범위 내 응급수리 소요예산 추가배정	정비창 실무자 협의

사 업 명
항공기정비유지 (310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항공기정비유지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항공기정비유지	27,917	30,745	30,644	40,181	34,149	3,505	11.4

### 4. 사업목적

-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항공기 검사정비 및 부품 확보
-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항공유 및 항공보험료
- 항공 임무수행에 필요한 운용장비(검사·안전·지원 장비)
- 항공요원의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직무교육 및 운영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항공안전법(법률 제 1532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16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16호) 제2조의 2(경찰용·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에 준용한다.
- 해양경찰청 항공운영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4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항공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항공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보유 항공기 26대(비행기 6, 헬기 20)의 신속하고 안전한 해상치안임무 수행을 위하여 계획정비·부품구매·수리·제작사 기술회보 수행 및 상태결함 해소
- 해양경찰 보유 항공기 26대의 해상 치안임무 수행을 위한 항공유 확보
- 항공요원 국내·외 직무교육비 및 항공기 보험료 등
- 공항 격납고, 계류장 및 활주로 등 공항사용료
- 항공정비관련 국내·외 출장여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수용비 등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항공기 정비 연간 소요량 책정 → 항공기 정비계획수립 → 연간 외주정비용역 계약 체결 → 항공기 정비수행 → 공사검수 → 정비업체 대금청구 → 대금지급
  - 항공기 부품·장비 소요량 책정 → 항공기 부품·장비 구매계획수립 → 계약체결 → 물품납품 → 물품검수 → 계약업체 대금청구 → 대금지급
  - 연간 운용계획에 의거 항공유 소요량 책정 → 항공유 단가계약 계획수립 → 지역별 항공유 공급단가 계약체결 → 국제법에 의거 단가조정 → 항공기 비행 → 항공유 수급 → 공급업체별 대금청구 → 대금지급
- \*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물품관리법, 해양경찰항공운영규칙, 항공기제작사 매뉴얼

사 업 명
차량정비유지 (3103-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2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차량정비유지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차량정비유지	2,282	2,224	2,224	2,111	2,111	△113	△5.1

### 4. 사업목적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해 공용차량을 구매·보급하고 장기사용, 과다운행 등 노후차량에 대한 교체 및 시설장비유지·유류 등 수요에 맞는 운영비 집행으로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실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2조 차량의 배치 경찰차량은 다음 각호의 해양경찰기관에 배치한다.1. 해양경찰청2. 해양경찰교육원3. 지방해양경찰청4. 해양경찰서5. 해양경찰정비창6. 파출소, 출장소7. 그 밖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8조 정비 및 수리장소 경찰차량의 정비와 수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비업의 종류에서 규정한 정비시설이 완비된 정비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경찰차량 관리규칙 제9조 정비 및 수리① 제7조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불량 개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수리가 가능한 소모부속품은 교환하고 이외 수리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 하지 않는 파출소·출장소 및 파견부서 등의 차량 유류급유 및 수리는 예산집행 규정에 의거 운용부서 현지 실정에 맞게 집행 운용 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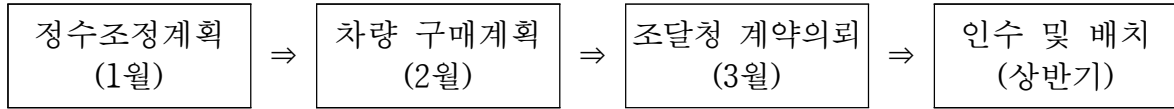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 수행 및 기동력 확보를 위한 노후차량 대체 지원
- 해안가 운행 및 순찰로 인한 염분부식, 차량수명 단축
- 장기사용으로 수리·정비 수요증가 등 노후 순찰차 우선 교체
- \* 해안가 위주 배치된 순찰·구조차량의 차체부식으로 인한 교체 필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항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차량구매 절차



### ○ 차량운영비 집행절차

- 차량 유지비 연간 소요비 책정(예산배정) → 정비(차량수리), 유류, 소모품 등 구매계획 → 수리의뢰 및 구매계약 → 수리 및 납품검수 → 대금지급

사 업 명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3103-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3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정비지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신설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신설	899	8,169	4,169	17,249	13,249	9,080	218

### 4. 사업목적

- 現 해양경찰 정비창(부산) 함정정비 과부하 해소 및 1,000톤 이상 대형함정을 자체 상가 정비할 수 있는 정비창 신축으로 최상의 해양치안서비스 제공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③ 해양경찰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 물품관리법 제23조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고 그 정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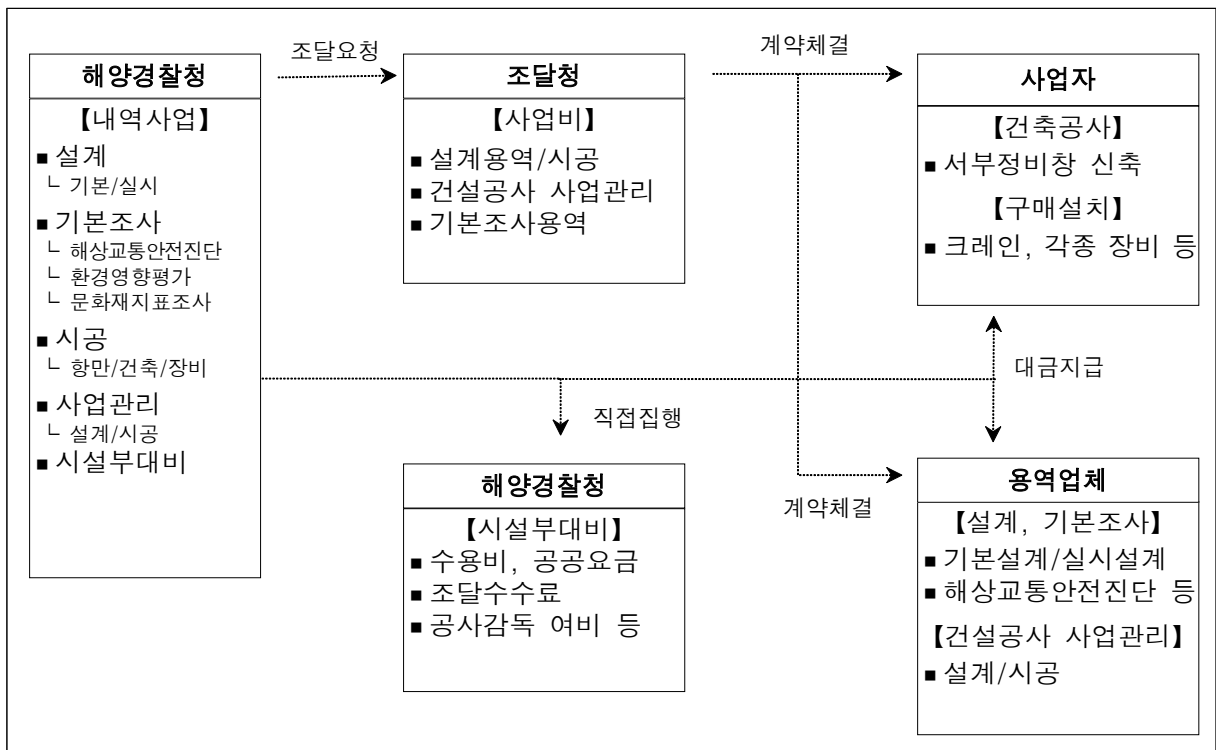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7. 7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라남도 지역공약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 '17. 9월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계획 수립 (257,802백만원)
- '18. 5월 예비타당성조사사업 선정 / '19. 8월 예타 통과의결 (199,432백만원)
- '19. 12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계약('19. 12. ~ '20. 9.)
- '20. 1월 ~ 기본조사(해상교통안전진단, 문화재지표조사 등) 수행 중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합정유류관리 (3104-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0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합정유류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합정유류관리	104,649	97,150	86,730	100,940	100,220	13,490	15.5

### 4. 사업목적

- 해경 경비합정 운항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류를 적기에 공급하여 경비합정의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 원활한 임무수행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합정운영 관리규칙(해양경찰청 훈령 제57호)
- 제39조(유류확보), 제40조(유류소모기준), 제41조(유류공급)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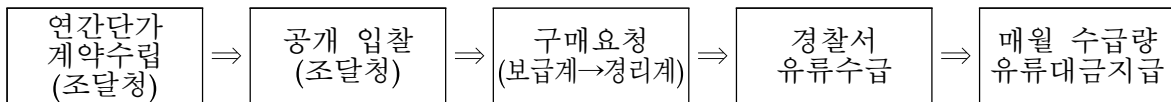
- 해상치안 수요 증가 및 전력증강 사업에 따른 보유 합정 증가 및 대형화 추세에 따라 유류 소모량 증가
- 해양사고 사전 예방활동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유류 적기 공급 필요성 대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절차도



- 계약방식 : 매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조달청 단가계약 체결

사 업 명
합정보급관리 (3104-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1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합정보급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합정보급관리	5,644	5,624	5,624	7,262	5,972	348	6.2

### 4. 사업목적

- 합정운영에 필수적인 소모품·비품, 엔진·발전기 부속품, 정비용 페인트, 정수물품 관리, 공기부양정 스커트 등 합정 381척 가동을 위한 유지비 확보 및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물품관리법 제15조(수급관리계획),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 ② 추진경위

- 합정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지속 확보로 원활한 보급체제 구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소요예산 요청(소속기관) → 관서별 소요예산 확보 및 배정(본청) → 연간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소속기관)

사 업 명
급대여품관리 (3104-3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2
명칭	해양경비및안전활동	보급지원	급대여품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급대여품관리	5,674	6,005	6,005	6,005	6,005	-	-

### 4. 사업목적

- 경찰관 및 의무경찰에 대한 경찰제복, 장구류, 구매 지급으로 경찰관 품위유지 및 해상치안질서 확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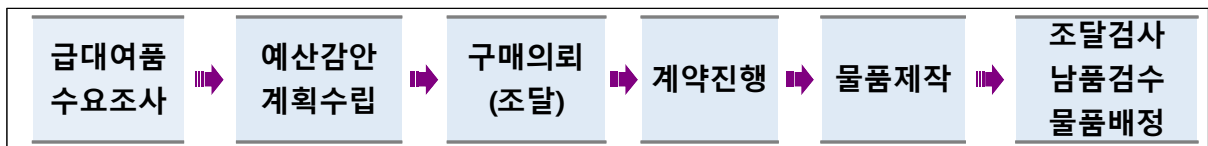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법[법률 제12912호] 제20조(복제 및 무기휴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해수부령 제250호) 제2조(착용수칙)
- 특수직무 경찰관 복제에 관한 규칙(훈령 제1호) 제9조(특수제복의 차림)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호) 제2조(급여품), 제3조(대여품)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경찰공무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진압및전투장비관리 (3104-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4	303
명칭	해양경비체계강화	보급지원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619	1,124	1,124	4,661	1,683	559	49.7

**4. 사업목적**

- 해상주권 확보 및 해상치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비함정에 소요되는 무기, 탄약, 진압장비 등을 적기 공급하여 전투력 유지 및 강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② 제1항에서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복제 및 무기휴대 ①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제2장 무기·탄약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2장 진압장비
-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3장 진압 및 보호장구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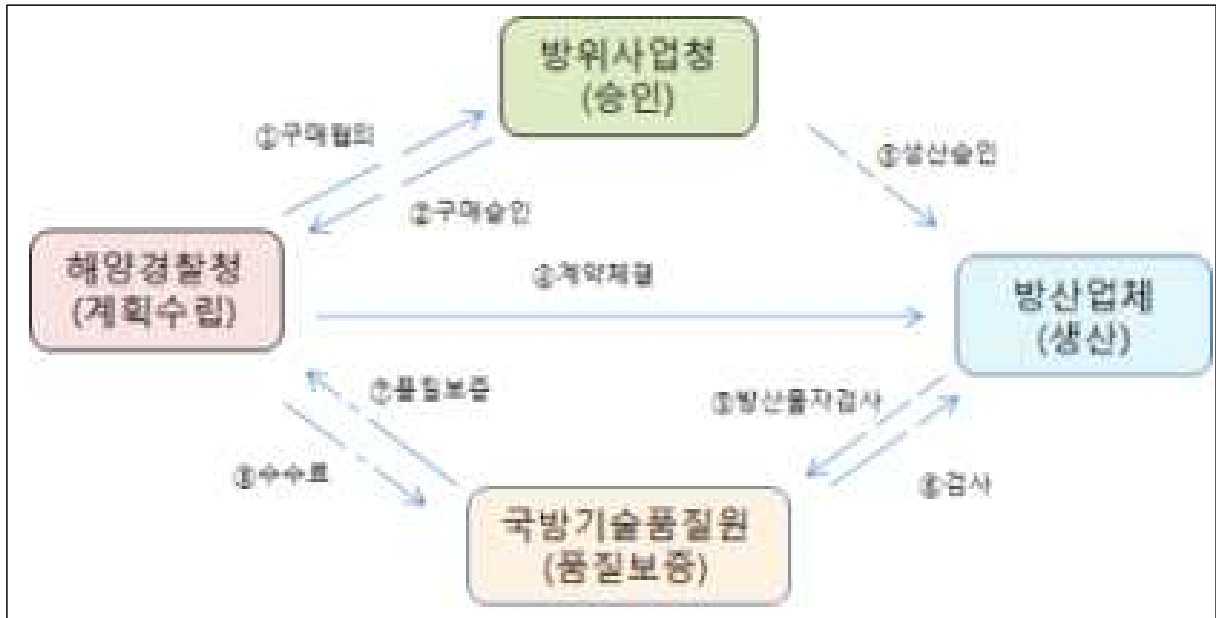
- 대통령 지시('06.6.8) : 「동해상 작전수행 능력 증강대책 및 한미 군사 지휘관계 구상」 보고서
    - 해경함정은 우발상황 발생 시 임무교대를 보장할 수 있는 척수 확보
    - 상황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40밀리 자동포로 무장 강화
  - 대통령 지시('11. 12. 27) : 「국토해양부 '12년 연두업무」 보고서
    - 장비·인력 보강과 함께 자체 훈련을 통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 '11. 12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중 인천해경서 3005함 故 이청호 경사 순직사건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 해경청, 기재부, 행안부, 외통부, 법무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가보훈처 대책회의 결과 단속함정(대형함정 9척, 고속 단정 30대) 증강, 해상특수기동대 인력(102명) 보강, 단속장 비 보강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경찰관 안전성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 결론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함정계획정비 (4231-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정비창 운영	함정정비	함정계획정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함정계획정비	28,921	33,960	33,960	46,850	39,460	5,500	16.2

**4. 사업목적**

- (주기관정비) 경비함정 주기관(엔진) 제작사 정비기준에 따른 기관형별 주기관(엔진) 분해수리로 본래의 함정성능 유지를 지원하는 것임.
- (함정기본정비비) 연간 함정수리계획에 의거 정비창에 입창하는 함정을 대상으로 엔진을 제외한 선체, 전기, 추진기 등의 기본 정비비 지원하는 것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6조(함정정비의 종류 및 범위)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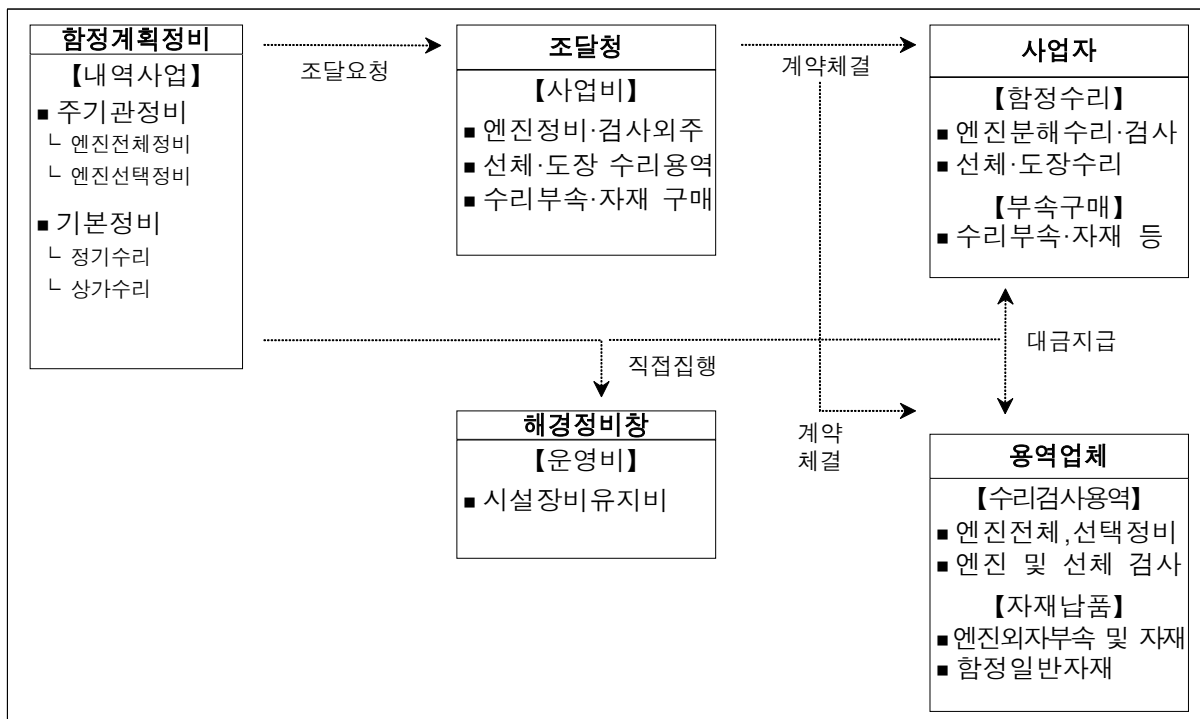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해경함정 엔진의 제작사 정비시간에 따른 분해수리 및 함정정비규칙상 주기에 따른 선체정비 함정의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선박 펀드 사업으로 도입된 중·대형함정의 주기관 (엔진,발전기) 정비 주기(총 분해 및 중간분해수리 : 5~10년) '18년 이후 집중 도래로, 이들 함정의 수리비 대폭증가
  - \* '08년~'13년까지 중·대형 함정 42척(대13, 중29)을 건조 (연평균 7.6척 건조)
  - \* '08년 중·대형함정 44척 → '20년 중·대형함정 77척 (1.8배 증가)
- 대상함정: 352척 중 244척(경비함정 187, 특수정 37척 등)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정비창에 입창하는 수리함정의 자재비 등 연간 241척의 함정수리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비창관리 (4231-30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3
명칭	정비창 운영	함정정비	정비창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비창관리	1,624	3,066	3,066	2,913	2,866	△200	△6.5

### 4. 사업목적

- (정비창운영경비) 해경정비창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각 수리공장 재료비 등 운영경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수리시설정비)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시설(리프트도크, 엔진시운전실, 각종 발전기)의 정비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시설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장비물품구입) 함정수리에 필요한 수리장비(고소작업체, 이동정비차량, 엔진 분해 특수공구)에 노후 교체 및 신규 구입비 지원하는 것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칙

-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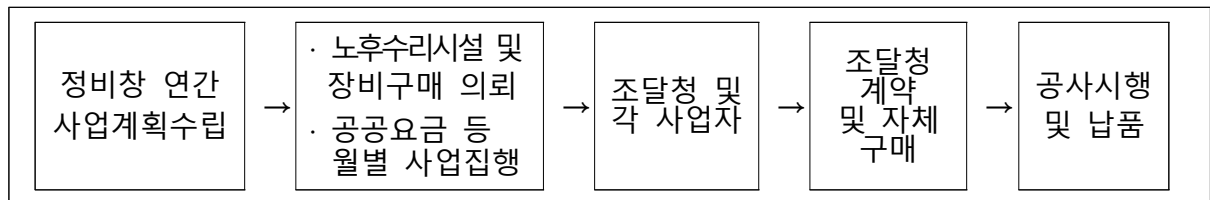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0년부터 정비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운영경비 지원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책임운영기관 운영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경함정 승조원, 해수산 관련 종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본부인건비 (7201-1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본부인건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본부인건비	66,707	69,038	68,597	79,073	79,073	10,476	15.3

###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등) 보수지급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보수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 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지방관서인건비 (7201-1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지방관서인건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지방관서인건비	661,464	737,799	723,495	770,554	770,554	47,059	6.5

###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경찰관, 일반직, 연봉제) 보수지급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및 교육생 보수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

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 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 공무원은 별표 31에 따른다. 다만,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연도 중에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인건비 지급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진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정비창인건비 (7201-10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1	1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인건비	정비창인건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비창인건비	13,600	14,484	14,315	15,145	15,145	813	5.6

###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정비창 소속공무원(경찰관, 일반직) 보수 지급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년부터 정비창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면서 운영경비 지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개인별 지급

사 업 명
본부기본경비(총액) (7202-2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총액)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본부기본경비(총액)	8,433	8,954	8,954	9,458	9,458	504	5.6

### 4. 사업목적

-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 실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시험의 방법) ①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종합적성검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다만, 시험 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②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경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승인을 얻어 경찰교육원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0조(「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수의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7조(직장훈련의 구분 등)
- ①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둔 성실한 채용 및 승진 시험·심사 운용
  -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대직무교육원 외국어 및 합정 전문교육
  - 사회 각 계층의 저명인사 및 전문가를 초빙, 새롭고 다양한 지식과 견문 전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채용 및 승진 시험·심사 계획 수립 → 시험·심사 → 채용, 승진</li><li>- 교육계획 수립 → 대상자 교육 → 직무복귀</li><li>- 외래강사 초빙계획 수립 → 시행</li></ul> |
|--|

사 업 명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7202-2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합정건조	122,718	165,400	170,500	141,933	124,843	△45,657	△26.8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의 원활한 운영
- 근무직원의 매식비, 일·숙직근무 지원, 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경비 조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예산작성→사업계획수립→사업집행→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지방관서운영(총액) (7202-2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운영(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지방관서운영(총액)	1,216	1,414	1,414	1,417	1,417	3	0.2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총액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의 원활한 운영
- 근무직원의 매식비, 일·숙직근무 지원, 과 운영비 지급을 위한 경비 조달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기본경비(총액) (7202-2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육원기본경비(총액)	472	490	490	505	490	-	-

**4. 사업목적**

- 우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운영 지원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 만족도 향상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
-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교육훈련 수당의 지급)
-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6조(교육훈련실시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임·필수·선발교육)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및 교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시행 → 교육결과에 따른 집행 계획 수립 → 예산 집행

사 업 명
정비창기본경비(총액) (7202-204)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총액)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비창기본경비(총액)	452	452	452	454	454	2	0.4

**4. 사업목적**

- 해양경찰정비창 수리시설 및 주요장비의 효율적 지원운용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③ 해양경찰청장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보유합정 수리 전담기관인 정비창의 기준경비 지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연간 함정수리계획 의거 지원계획 수립 → 함정수리 지원 지출요구 → 기본경비 집행

사 업 명
본부기본경비 (7202-25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본부기본경비	2,654	3,069	2,993	3,596	3,596	603	19.7

### 4. 사업목적

- 우수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 실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목적)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5조(시험의 방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0조(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9조(급식등) 및 제24조(교육훈련비의 지급)
- 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및 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 ② 추진경위

-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둔 성실한 채용 및 승진시험 운용
-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및 해양·경찰·군 교육기관 교육
- 해양·수산계열 고등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신입경찰관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훈련함 등 전문 해양 실습시설·장비 부족을 보완하는 해양경찰 전문성교육 강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및 승진시험 계획 수립 → 시험 → 채용, 승진</li> <li>- 교육계획 수립 → 대상자 교육 → 직무복귀</li> </ul> |
|--|

사 업 명
지방관서기본경비 (7202-25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지방관서기본경비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지방관서기본경비	30,624	28,503	28,176	29,059	29,059	883	3.0

**4. 사업목적**

- 지방청 및 경찰서 기본경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

② 추진경위

- 5개 지방청과 소속 19개 경찰서 관서기본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필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기본경비 (7202-252)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교육원기본경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육원기본경비	1,013	1,013	1,013	998	998	△15	△0.1

### 4. 사업목적

- 우수 해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운영 지원
- 교육운영 지원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및 교육 만족도 향상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 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입 기본 전문교육)

①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 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입·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소속기관 기준경비로써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정비창기본경비 (7202-253)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2	25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관서운영기본경비	정비창기본경비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비창기본경비	11	11	11	11	11	-	-

### 4. 사업목적

- 해양경찰 정비창 소요 기준경비(총액인건비제 대상 경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③ 해양경찰청장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민안전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청 보유합정 수리 전담기관인 정비창의 기준경비 지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정비창)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소속기관 기준경비로써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

사 업 명
의무경찰관리 (7203-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의무경찰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의무경찰관리	8,894	8,344	8,344	7,659	7,659	△685	△8.2

### 4. 사업목적

- (의무경찰 급식비) 현역 복무 의무경찰에 대한 급식비 지원(현역병과 단가 동일)
- (건강보험 예탁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현역병 요양급여비용 예탁 지급
- (의경관리및복지) 의무경찰 사기진작, 복지, 선발, 관리운영 등에 대한 지원
- (보급품및건강관리) 의무경찰 기본용품, 건강검진,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병역법 제3절 전환복무
-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설치 및 임무)

-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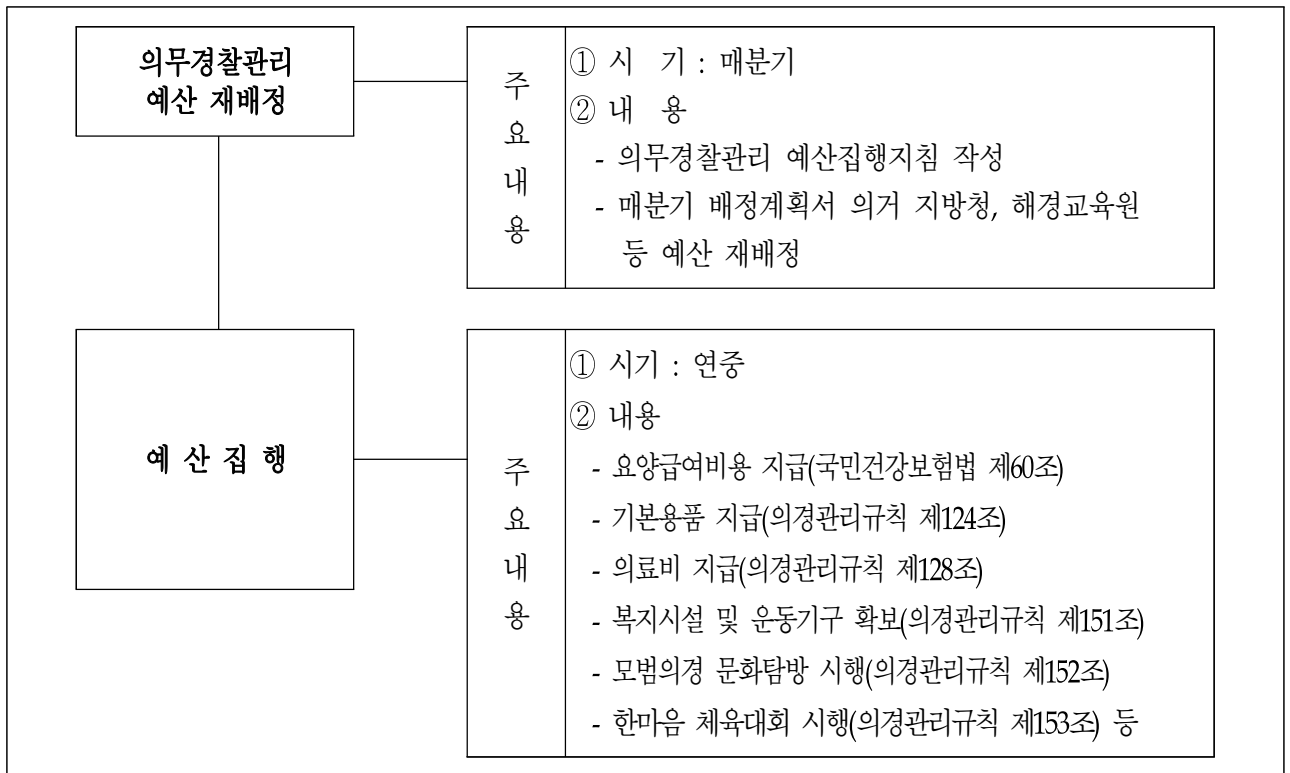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970. 12. 31. :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의거 전투경찰순경을 운용하면서 대간첩 작전 수행과 치안서비스 지원
- 2016. 01. 25.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총무활동 (720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총무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총무활동	2,198	2,779	2,779	3,211	2,807	28	1.0

### 4. 사업목적

- (총무활동지원) 총무활동은 운영경비로써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 및 기획활동, 행사 의전 지원 소속기관 주요정책 활동사항 운영지원, 민원인 등 대국민 지원하는 사업
- (정책소통활동) 언론 등을 통한 주요정책 국민 소통 및 해양사고 감소를 위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
- (감사활동지원) 해양경찰 자체감사 및 공직 기강 확립에 필요한 복무점검 지원하는 사업
- (기획활동지원) 해양경찰 주요 정책수립·추진, 농해수위·예결위·법사위 및 국정감사 등 기획·국회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
- (행정법무지원) 해양경찰청 내 조직·혁신·법무·성과관리 등 해양경찰의 인력, 법령, 규칙 등 조직 운영을 보조 하고 지원하는 사업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 경찰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보안업무규정 제32조(보호구역), 제35조(보안측정)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자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국무총리 지시 2014-1호)
-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 제출요구)
-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24146호)
- 연안관리법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대변인)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4장(언론의 취재지원 등) (대통령령 제24988호)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직자 윤리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개정)
- 감사원법(법률 제13204호, 2015.2.3. 개정)
-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7787호)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8215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83, 2016.5.29. 개정)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0조(대통령령 제28211호)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449호)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8521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 제14839호)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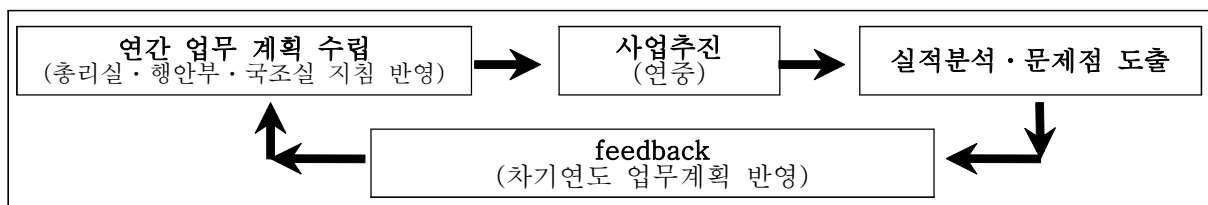
- '99년 대한요트협회와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창설
- '01년부터 국가대표 선발 겸한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개최
- 「정책보도모니터링 시스템」 시행('04. 6. 1)
- 국무총리훈령 제462호 정책품질관리규정('05. 7. 1)
- '13년 해양경비법 개정에 따른 해양경찰의날 법정기념일 격상

- 2017. 7.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국정목표, 전략, 과제 실현을 위한 감사·감찰 업무 실시 (국민이 주인인 정부·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적재적소·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2017. 8. 국내외 전체공관 '갑질'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해경청 갑질 전수조사 및 갑질 내부 금지규정 마련, 청렴고충 신문고 개설 운영 실시
- 대통령 공약사항, 국정과제, 정책협의회, 재조해경 5개년 계획 수립 등 내·외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에 필요한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 주요정책, 업무계획 수립 백서발간, 통계사업 등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도서구입 등 부대경비
- 국회법 의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 시 수반되는 인쇄비, 국회출입에 필요한 여비로 구성된 부대경비
-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 인력 충원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활동
- 조직 정체성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청 조직법 제정 및 우리청 소관 법령 제·개정, 체계적 입법관리 등을 위한 법무활동
- 해경청 대내외 소통 및 조직문화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성과관리 활동 등을 위한 여비 및 부대경비
- 2009 정부업무평가 「정책소통 홍보」 시행('09. 4. 21)
- 해양경찰청 대·내외 소통 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소통활동 등을 위한 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소속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복지역량강화 (7203-30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복지역량강화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복지역량강화	4,748	5,646	5,646	9,515	6,074	428	7.6

**4. 사업목적**

- (직원복지 지원) 해상경비, 수색·구조 및 치안확보에 전념하는 해양경찰 직원의 사기 진작과 고위험 임무 수행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료 등을 위해 전직원 대상 심리상담, 퇴직지원, 수련원, 특수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직원숙소 관리) 전국권 인사발령으로 시·도를 넘어 원거리 이동하는 직원(매년 1,400여명)의 안정된 주거생활 보장 및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비연고자 대상으로 숙소를 지원하는 사업
- (보육시설 지원)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생산성 제고 및 근무만족도 증진을 위해 5개소(본청, 서해·남해·동해·제주지방청) 어린이집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료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9조(직원숙소 지원)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1조(퇴직경찰관취업 등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등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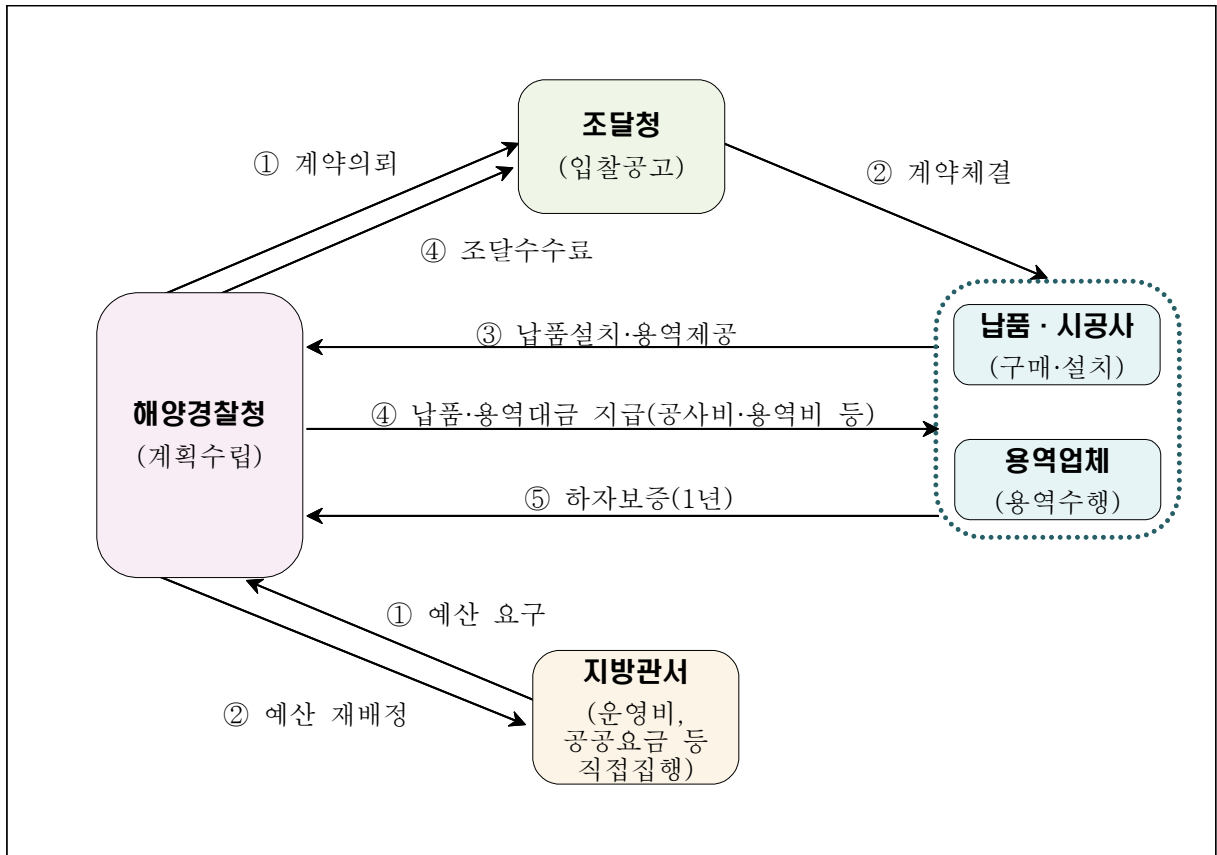
- 2014~ PTSD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선대상자 및 희망자 선정 후 집중 마음돌봄\*(심리상담) 실시
  - \* 2018년도부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명칭을 마음돌봄으로 변경함.
- 2000~ 함정·안전센터·분석실 등 특수부서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 야간(교대)근무자는 2015년부터 검진 실시
- 2014~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대상 해양경찰 취업지원센터 운영
- 1981~ 비연고 무주택자 직원숙소 지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 2010. 3. 2.~ 직장내 보육시설 5개소 개원·운영(16년 1개소 신설)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수혜자 : 해양경찰 공무원 및 가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본청 및 동·서·남·제주 지방청 어린이집 (푸르니, 모아맘, 킨더솔레)	50%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재정관리활동 (7203-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재정관리활동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재정관리활동	4,426	5,641	5,637	6,394	5,843	206	3.7

**4. 사업목적**

- 원활한 해상치안 업무수행을 위한 해양경찰 예산편성 및 배정
-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성과관리 수행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② 추진경위
  - 해양경찰 예산편성, 결산, 국유재산관리 및 재정성과관리 등 수행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예산작성→사업계획수립→사업집행→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인재선발양성지원 (7203-30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4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인재선발양성지원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인재선발양성지원	1,178	1,476	1,476	1,515	1,470	△6	△0.4

### 4. 사업목적

- 현장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훈련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직무역량 및 행정발전 향상을 도모
-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승진업무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교육훈련 여비의 지급 등) 및 제28조(직장훈련계획)

- 해양경찰법 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 경찰공무원법 제8조(신규채용) 및 제17조(교육훈련)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4조(교육훈련비 지급)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승진심사), 제26조(근속승진), 제27조(시험실시의 원칙)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 및 제9조(역량평가)
- 공무원인사운영규정 제45조의3(역량평가) 및 제63조(상시학습제도)

② 추진경위

- 우수인재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효율·체계적인 채용업무 지원
-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추진
- 지방교육센터 신설, 현장 중심형 인재양성 활성화
- 공무원의 자기주도학습 지원, 승진대상자의 객관적인 역량평가 요구
- PSI, 해양대테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해양경찰관(교육대상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채용) 채용계획 작성 → 인력채용 → 신입 교육·훈련실시 → 현업 직무수행  
 (교육) 연간교육계획 작성 → 교육대상자 선정 → 전문교육실시 → 직무복귀  
 (훈련) 연간훈련계획 작성 → 훈련종목·대상 선정 → 훈련집행 → 환류·피드백  
 (승진) 연간승진계획 작성 → 근무평정 → 승진대상자 선발 → 위원회 → 승진

사 업 명
치안및외근활동지원 (7203-305)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치안및외근활동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치안및외근활동지원	35,264	37,822	37,822	41,036	41,036	3,214	8.5

**4. 사업목적**

- 최일선 대민접점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수행을 위한 활동비
-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함정지휘관 품위유지비
-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정이하 경찰관 처우개선
- 해상테러 등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기동대원 활동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부산 동의대사태('89년) 이후 '90년부터 특별방법수당 지급

② 추진경위

- 최일선 근무 경찰관 대민봉사 및 민생치안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 함정요원의 사기진작 및 지휘, 통솔력 강화를 위한 품위유지비
- '01년 치안활동수당으로 명칭변경, 단가인상(7만원→17만원)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 예산작성 → 사업계획수립 → 사업집행 → 집행결과분석

사 업 명
교육원지원 (7203-307)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020	024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교육원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교육원지원	11,104	12,661	12,473	13,365	13,315	842	6.8

**4. 사업목적**

- (운영 및 시설관리) 교육원 청사 시설(34개동 건축물) 및 규모(대지 70만평) 제반시설 체계적 관리·유지보수 실시에 대해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해양경찰교육원 근무 공무원근로자 63명, 연평균 일용직근무자 908명에 대한 임금 및 고용부담금, 후생복지비 등 산출
- (교육훈련 시설 장비 유지) 新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훈련장, 실습장 등에 대한 장비구입 및 유지에 대한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시뮬레이션훈련장(11,500백만원×2.6%) 및 가상 구조훈련장(3,525백만원×3%) 등 교육훈련실습장에 대한 유지보수 산출
- (부대시설 지원) 해양경찰연구센터 연구활동 등의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현장 임무에 적합한 대응기술·장비개발을 통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 지원 산출

- (교육훈련 운영 지원) 현장중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운영에 대한 연간 지출 추이 등을 종합적 감안하여 추정, 각 변수들을 곱하여 지원규모 산출, 연간 교육인원 223,417명에 대한 1일 급식비 12천원(1식 4천원) 및 드론보험료(책임보험 1회×16백만원), 생활실 침구세탁(침구세탁 60만원×12월×6동)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산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17조(교육훈련)

①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정의)

"학교교육"이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경찰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 및 훈련
2.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 및 훈련
3.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교육훈련실시의 의무)

①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②임용권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추천권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하여 임용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입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8조(신입 기본 전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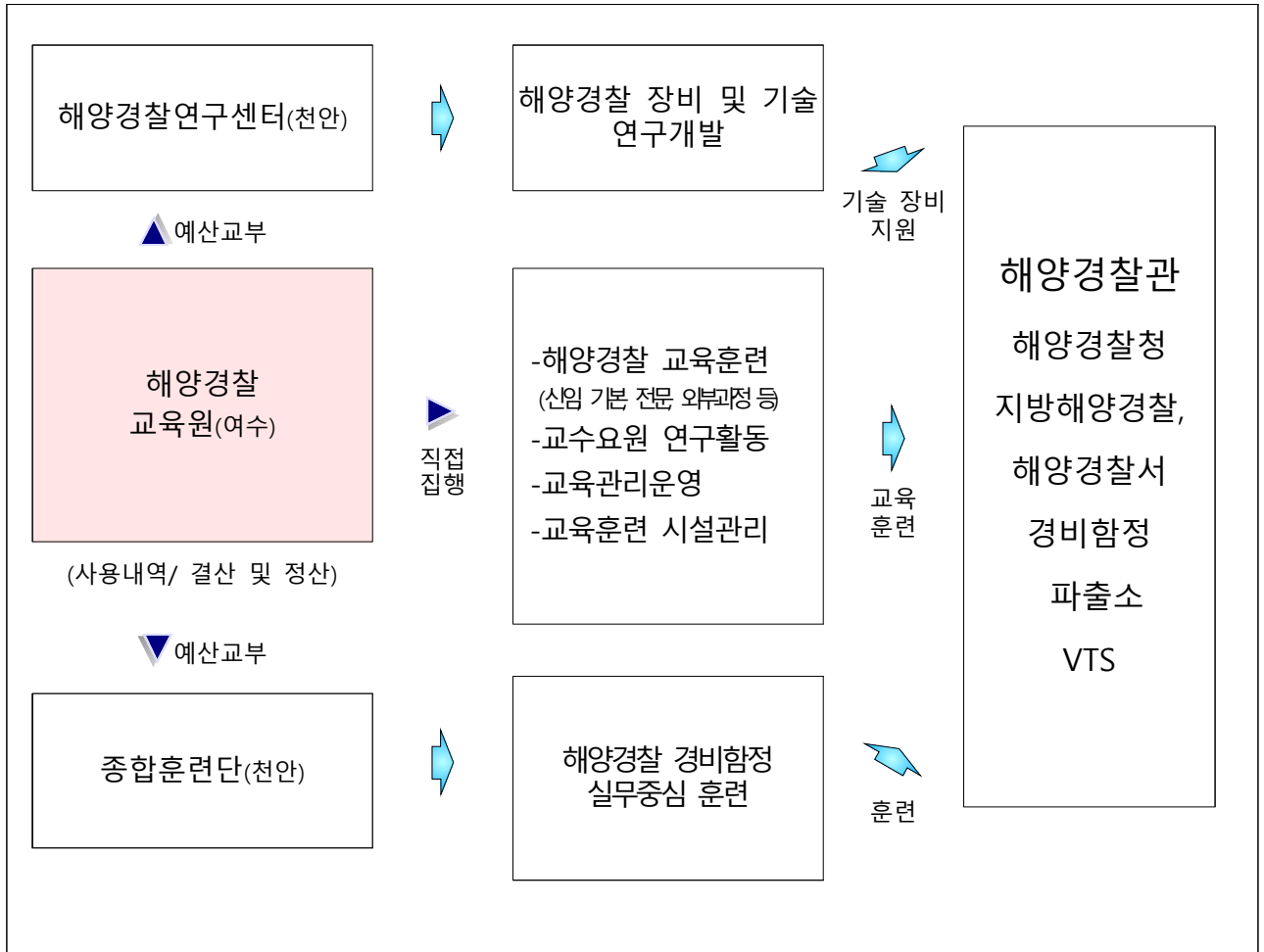
①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자로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전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된 후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경정·경감

- 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 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04. 1. 29. 해양경찰학교 직제신설 공포(대통령령 제 18260호)
  - '06. 1. 신임·기본과정 교육운영 일원화(경찰종합학교→해양경찰학교 이관)
  - '08 ~ 경정·경감기본교육 이관(경찰대학→해양경찰학교)
  - '13. 11. 11.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의거 해양경찰교육원 신축 이전(천안→여수)
  - '14. 3. 31. 해양경찰교육원 준공
  - '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보통신보안활동 (7203-308)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정보통신보안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보통신보안활동	582	946	946	876	752	△194	△20.5

### 4. 사업목적

- (정보통신보안활동) 정보통신망에 대한 통신보안활동 강화 및 사이버침해 위  
해요소 탐지·제거, 정보통신 보안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한 보안의식 제고
- (통신보안장비유지) 정보통신망 신형 암호장비 도입, 점검 및 보안자재 등 보안  
시스템 강화 및 전산취약점을 사전 점검·해소하여 중요자료 유출 예방하기 위함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국가정보원법(법률 제12948호) 제 3조(직무)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책무)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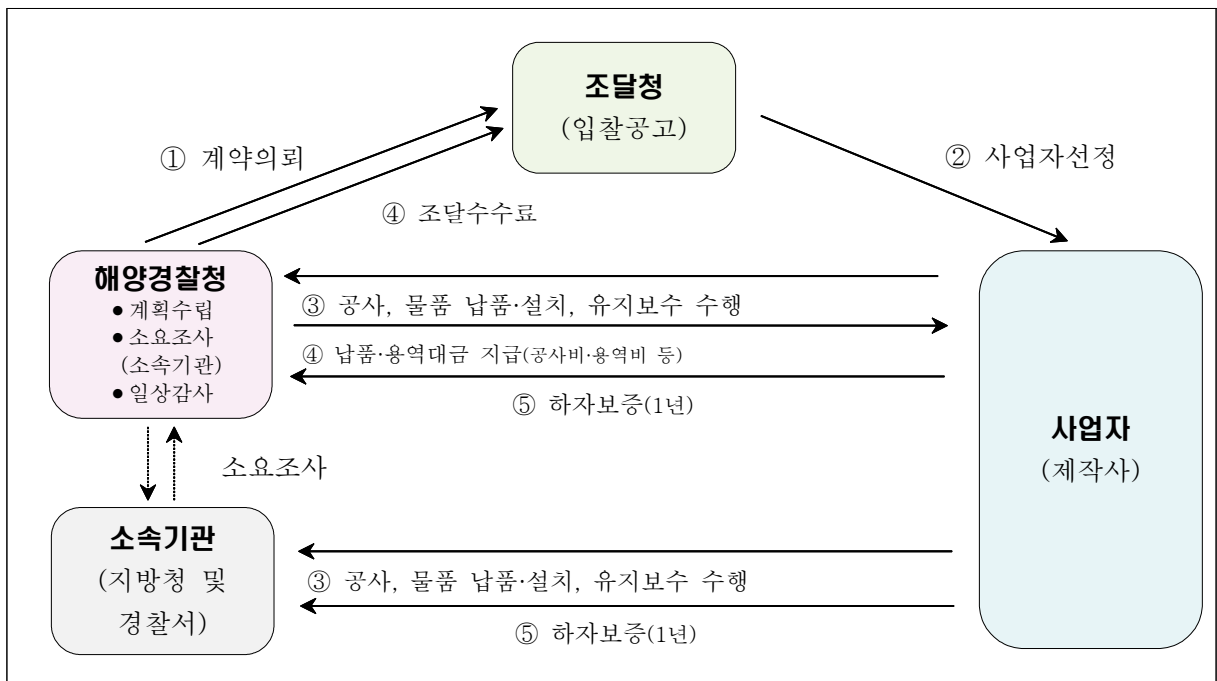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역량 강화추진으로 정보통신 보안활동 강화 및 신형 보안시스템 지속적 도입 등 통신보안에 소요되는 경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본청 등 26개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국제협력강화 (7203-309)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03	30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역량강화	국제협력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국제협력강화	197	203	203	203	187	△16	△7.9

### 4. 사업목적

- (국제협력 지원) 외국해양치안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해양안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 및 교류활동 지원
- (해외주재관 지원) 외국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에 대한 귀·부임 여비 및 이전비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 해양경찰법 제14조의4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 하여야 한다.
- 국제 다자·양자협약체 간 업무협약(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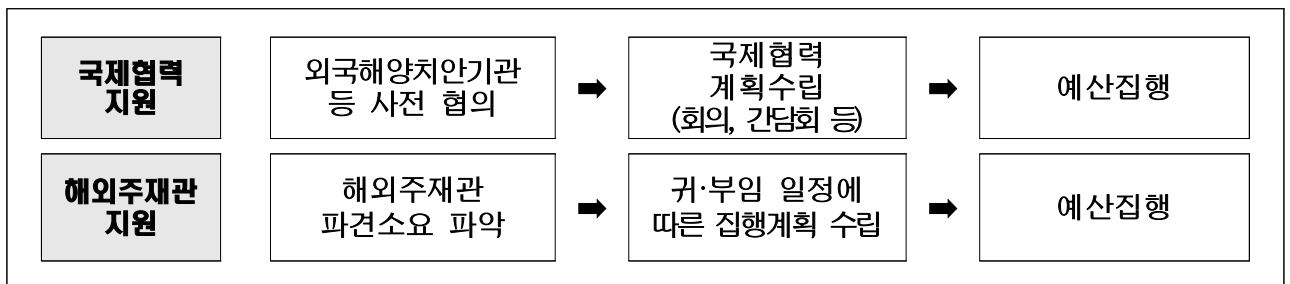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5. 07. 22. 국제협력관(경무관) 신설
- '14. 11. 19. 정부조직개편으로 국민안전처 신설
- '17. 07. 25.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경찰청 신설(국제협력관)
- '20. 01. 01. 기존 국제외사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분리
- 해양치안의 광역성 및 주변국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동향, 최근 지속 발생하는 원거리 해양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국제 해양경찰 역할 강화에 따른 국제 협력강화 사업 본격 추진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청사관리 (7237-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7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시설개선	청사관리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청사관리	5,792	4,805	4,805	5,061	5,061	256	5.3

### 4. 사업목적

- 노후청사 개·보수비 지원 및 청사 환경미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임시청사 또는 사유지 점유 청사 임차료 지급
- 신축·노후 파출장소 집기류 구입 및 교체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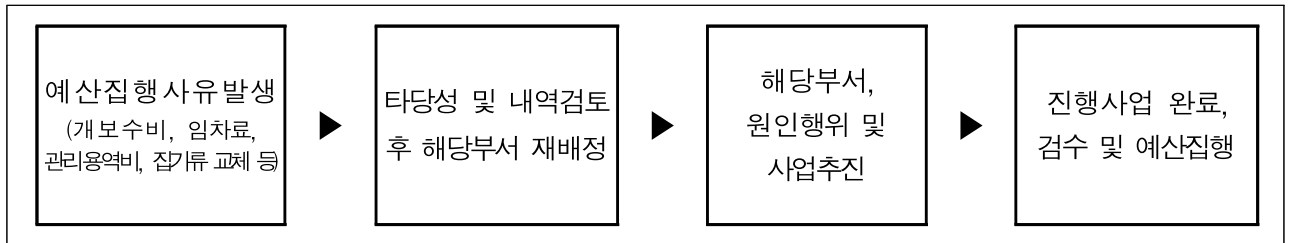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 ※ 제2조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추진경위 - 노후청사 개·보수, 임차료 등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7238-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8	30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해양경찰정보화관리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해양경찰정보화관리	15,968	16,691	16,691	23,397	18,739	2,048	12.3

### 4. 사업목적

- (정보화구축강화) 해양경찰 전자행정의 안정화·고도화·표준화를 추진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해상치안 업무의 효율성 향상, 신기술 적용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업무고도화위해 지원하는 것임
- (정보화유지보수·관리지원) 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및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신규사업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공공 정보화의 추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4조의2(선박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재계획의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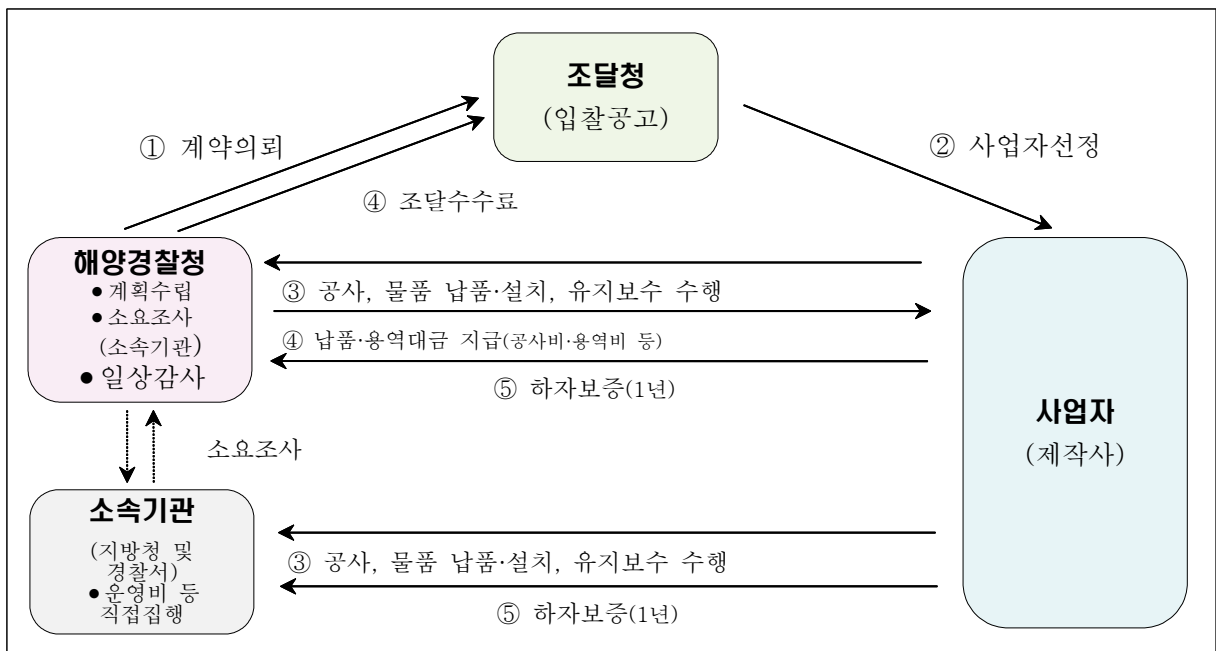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 업무의 전자화 및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수립
- 신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고도화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 안전하고 성숙한 정보사회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본청 등 29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구조기술개발(R&D) (7239-61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1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골든타임사수를위한수색 구조기술개발(R&D)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골든타임사수를 위한수색구조기술 개발(R&D)	1,672	4,850	4,850	9,023	7,763	2,913	60.1

### 4. 사업목적

- 해양 재난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 (전천후 수색구조 및 생존성 향상 기술개발) 다양한 해상사고 상황에서 수색구조 기술 및 요구구조자의 생존가능성·안전 확보기술 개발
  - (해양 수색구조 정보지원 기술개발) 신속한 수색구조 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고위험 예측기술 및 실시간 정보지원 기술 개발
  - (연안해역사고예방 및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기술개발) 다양한 연안환경(갯벌, 갯바위 양식장 등)에서 운용 가능한 구조보트, 연안안전활동 위험도평가·예측체계 개발을 통한 연안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현장 이동시간 최소화하는 기술 개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개발·지원)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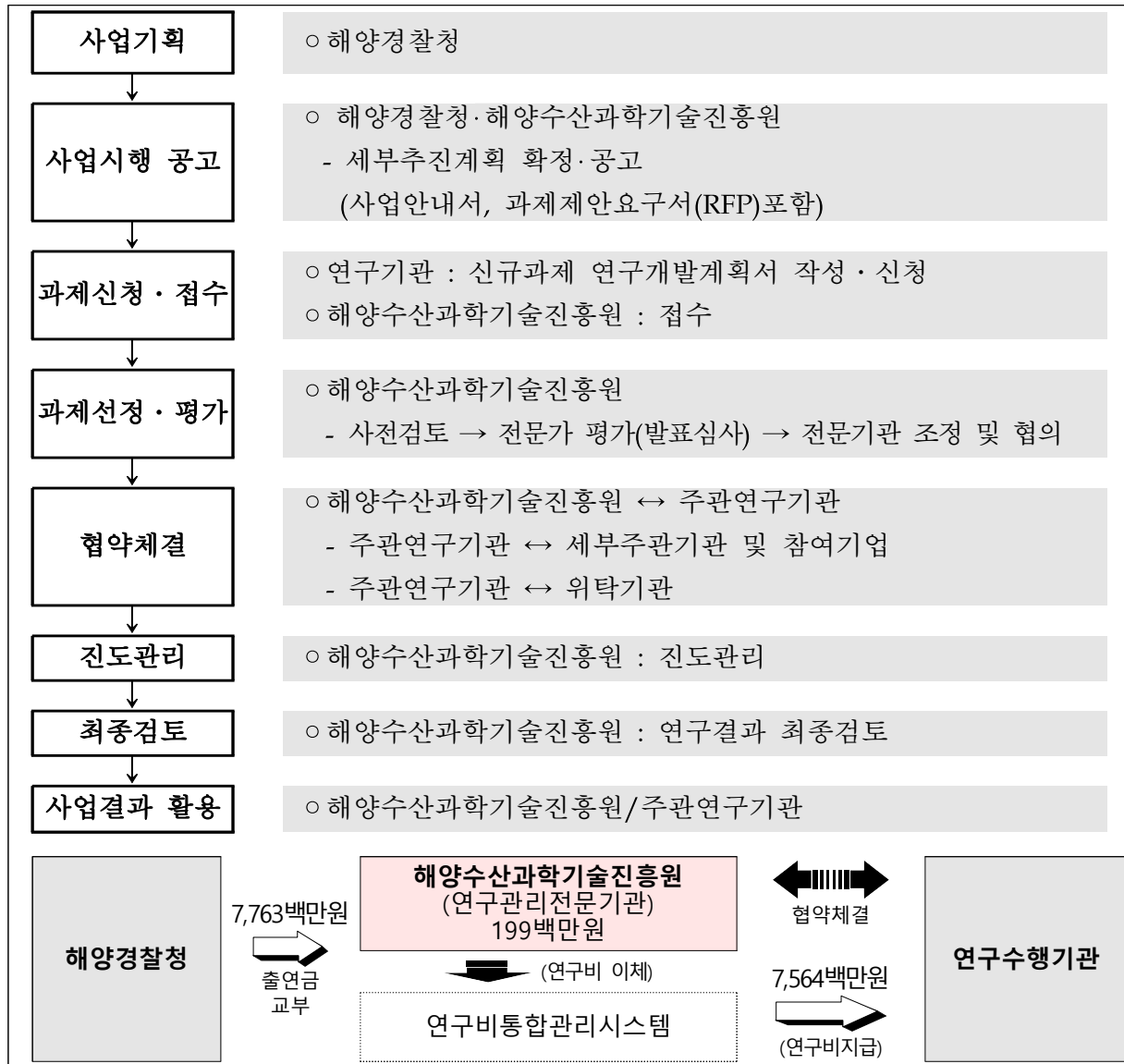
- 일몰 후속사업으로 재기획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19년)
  - 「해양구조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기획('18.1.)
- 해양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연차별 착수 시행
  - 전복선박 선체유지 및 강제복원기술 등 3개 신규과제 착수('19년)
  - 해양경찰 구조대원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 등 3개 신규과제 착수('20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3개 내역사업 8개 과제('21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선진화기술개발(R&D) (7239-612)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2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불법선박대응을위한장비 선진화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불법선박대응을 위한장비선진화 기술개발(R&D)	2,252	4,091	4,091	4,752	4,752	661	16.2

**4. 사업목적**

- 불법선박 저항시 효과적 대응기술 및 해양범죄 과학적 증거 수집능력 확보를 위한 해양특화 수사기법 개발
  - (불법선박 현장 대응 장비 선진화 기술) 불법선박 저항형태에 효과적 대응 및 단속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장비 개발 지원
  - (불법선박 등 해양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법과학 감식분석 지원기술) 해양 범죄에 대한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 및 해양에서의 특화된 수사기법 개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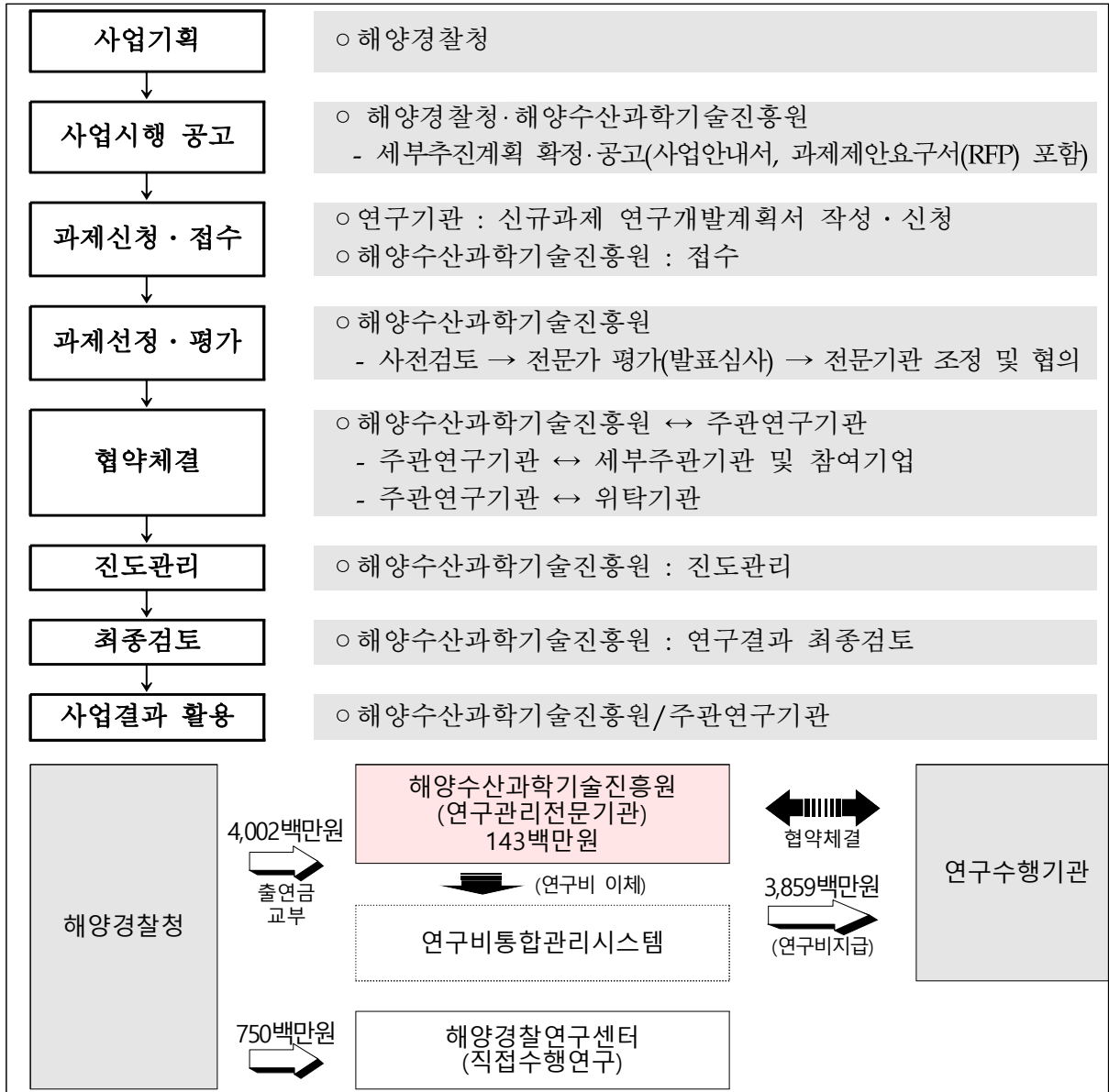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19년)
  - 「해양구조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기획('18.1.)
- 해양재난 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연차별 착수 시행
  - 전복선박 선체유지 및 강제복원기술 등 3개 신규과제 착수('19년)
  - 해양경찰 구조대원 스마트 지원장비 개발 등 3개 신규과제 착수('20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6개 과제('21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직접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기술개발(R&D)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3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방제단계별대응역량강화 기술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방제단계별대응 역량강화기술 개발(R&D)	1,100	3,311	3,311	6,439	5,604	2,293	69.3

**4. 사업목적**

-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기술개발
- (의사결정지원 및 오염현황 파악기술 개발) 해난선박(좌초, 충돌)의 선체상태 및  
해양오염 확산범위 등을 신속·과학적으로 판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개발
- (해양오염물질 처리·조치 기술 개발) 해상과 해안의 환경 및 오염물질 사고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회수 및 처리하는 해양오염물질 처리·조치 기술개발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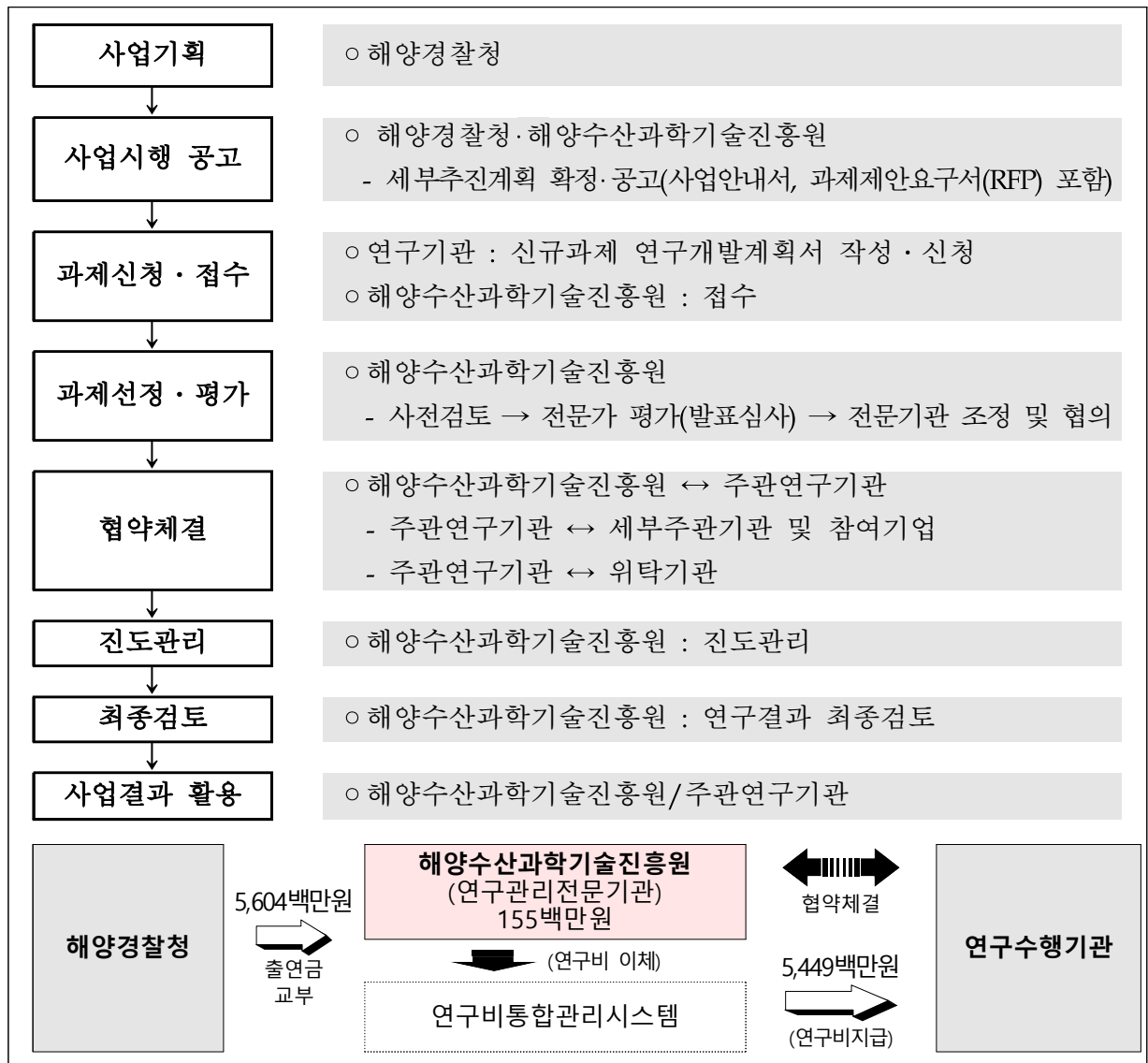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사업 추진('19년)
  -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지원기술개발(R&D)」 일몰사업 지정('18년 일몰)
  - 「해양경찰청 R&D 중장기 전략수립 기획연구」를 통해 신규사업 추진전략 수립('18.1.)
- 해양오염 사고시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 연차별 착수 시행
  -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 지원기술 등 2개 신규과제 착수('19년)
  - 해난사고시 수중 유류 이적기술 개발 등 1개 신규과제 착수('20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5개과제('21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무인항공기기반해양안전및불법어업수산생태계관리기술개발(R&D)(해경청) (7239-614)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무인항공기기반해양안전및불법어업수산생태계관리기술개발(R&D)(해경청)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무인항공기기반 해양안전및불법 어업수산생태계 관리기술개발 (R&D)(해경청)	3,283	2,647	2,647	2,723	2,723	76	2.9

### 4. 사업목적

- 다양한 해상상황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상특화 기체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양수산재난 신속대응, 불법어업 및 해양수산 생태계관리, 해상 재난감지 및 예측 등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21조(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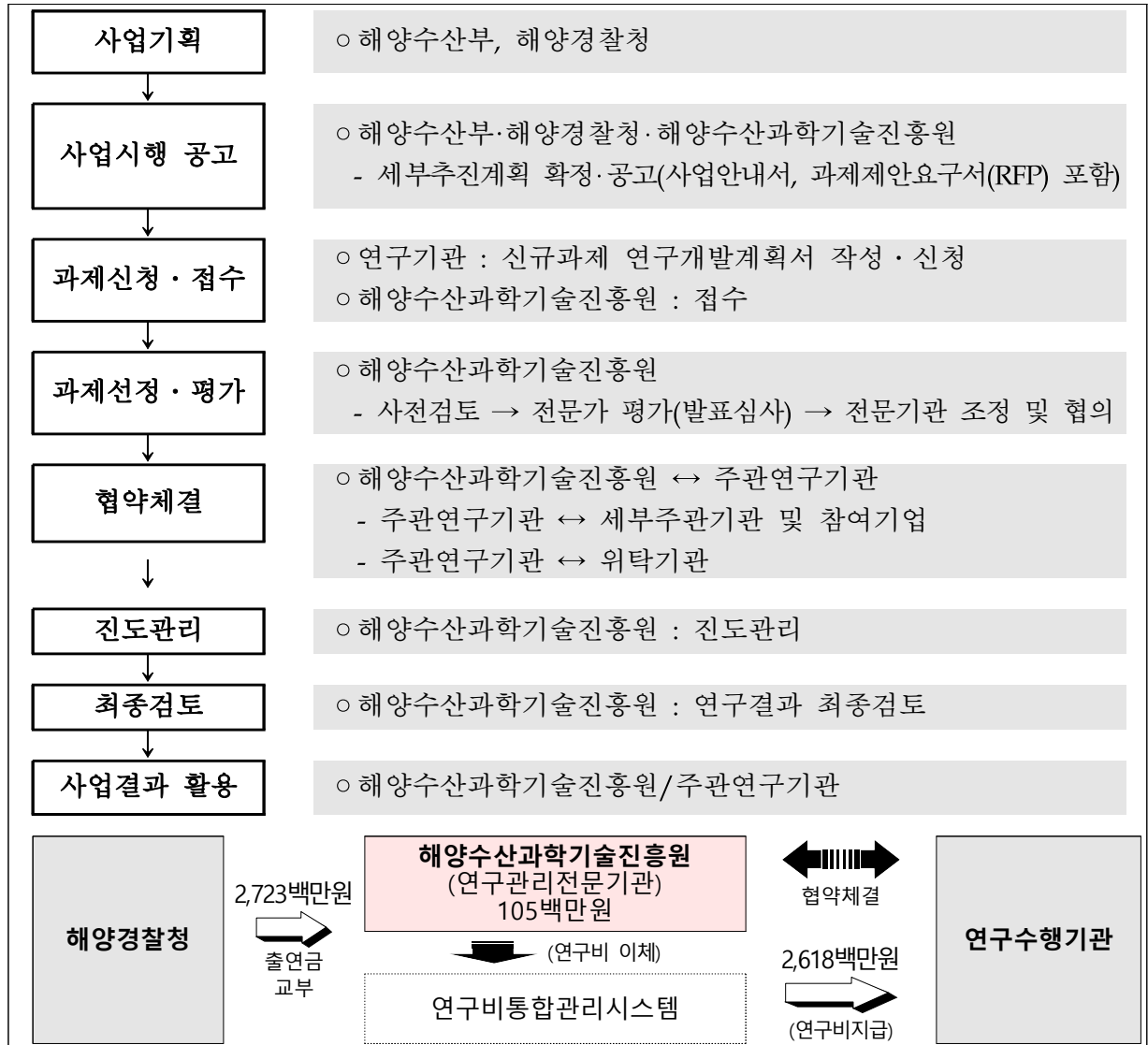
- 「어군 탐지용 드론개발」 기획연구 수행('16.12~'17.6) : 해양수산분야에서 고성능 무인기의 다목적 활용성 제시
- 신규 다부처사업 기획('18.) :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고기능 무인기 분야에 해양경찰청과 다부처 협업사업 기획
-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불법어업·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 사업 착수('19년)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해양경찰청)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해양관련 연구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7239-615)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5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지궤도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R&D)(해경청)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지궤도공공복합 통신위성개발 (R&D)(해경청)	-	-	-	1,575	1,575	1,575	순증

### 4. 사업목적

- 신속한 해양구조업무 및 주권수호 임무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공재난 위성통신망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 위성 개발
- 해양사고 및 불법조업 대처에 위성을 활용한 미래발전 전략 추진 중 해상 경비·수색구조 분야에 대한 무인·첨단화 기술접목에 필요한 필수 위성통신체계 구축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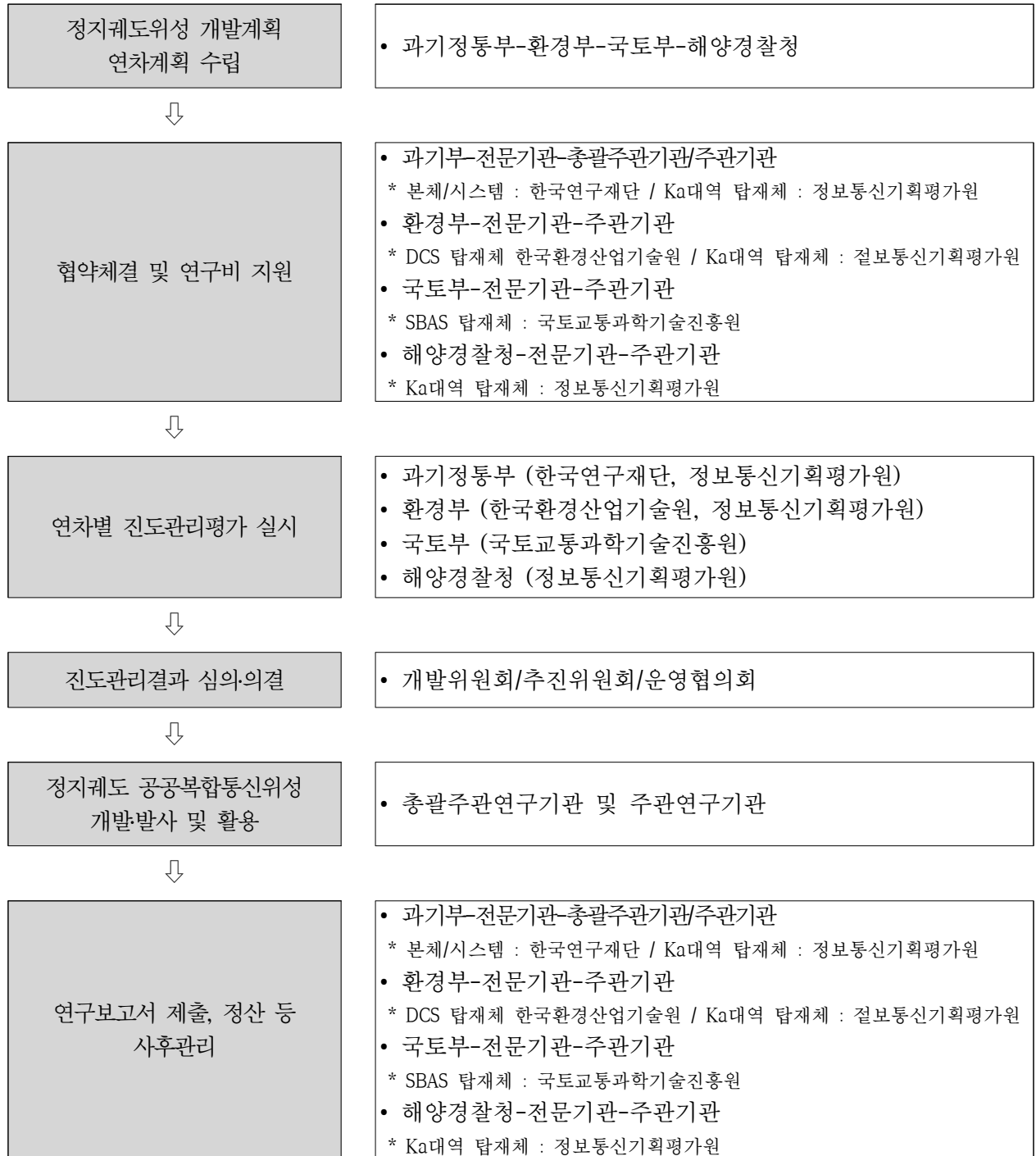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재)기획 착수('19.6)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19.6~9)
- 대용량 공공 재난위성통신망 확보로 안정적인 해상구조/영해보호활동을 위해 정지궤도 공공복합 위성 개발 사업 참여 요구('19. 10월)
- '20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19.11)
-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결과 “적합” 선정('19. 12월)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양경찰청 483억원(4개 참여부처 총 4,118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7년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해양경찰청)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다부처사업 : 과기정통부, 환경부, 국토부)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 위성·통신관련 연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IoT기반합정정비통합관제플랫폼개발(R&D)(해경청) (7239-617)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7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IoT기반합정정비통합관제 플랫폼개발(R&D)(해경청)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IoT기반합정정비 통합관제플랫폼 개발(R&D)(해경청)	-	-	-	1,040	1,040	1,040	순증

### 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합정 정비현장에 적용하여 분산된 정비 구성요소를 통합체계의 효율적\* 디지털 정비체계로 구축하는 'IoT 기반 합정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 \* 정비현황 실시간 공유, 작업관리 자동화, 고품질 정비 서비스 지원, 정비자원 운용 효율화, 인건관리 강화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3조(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민·군기술협력사업)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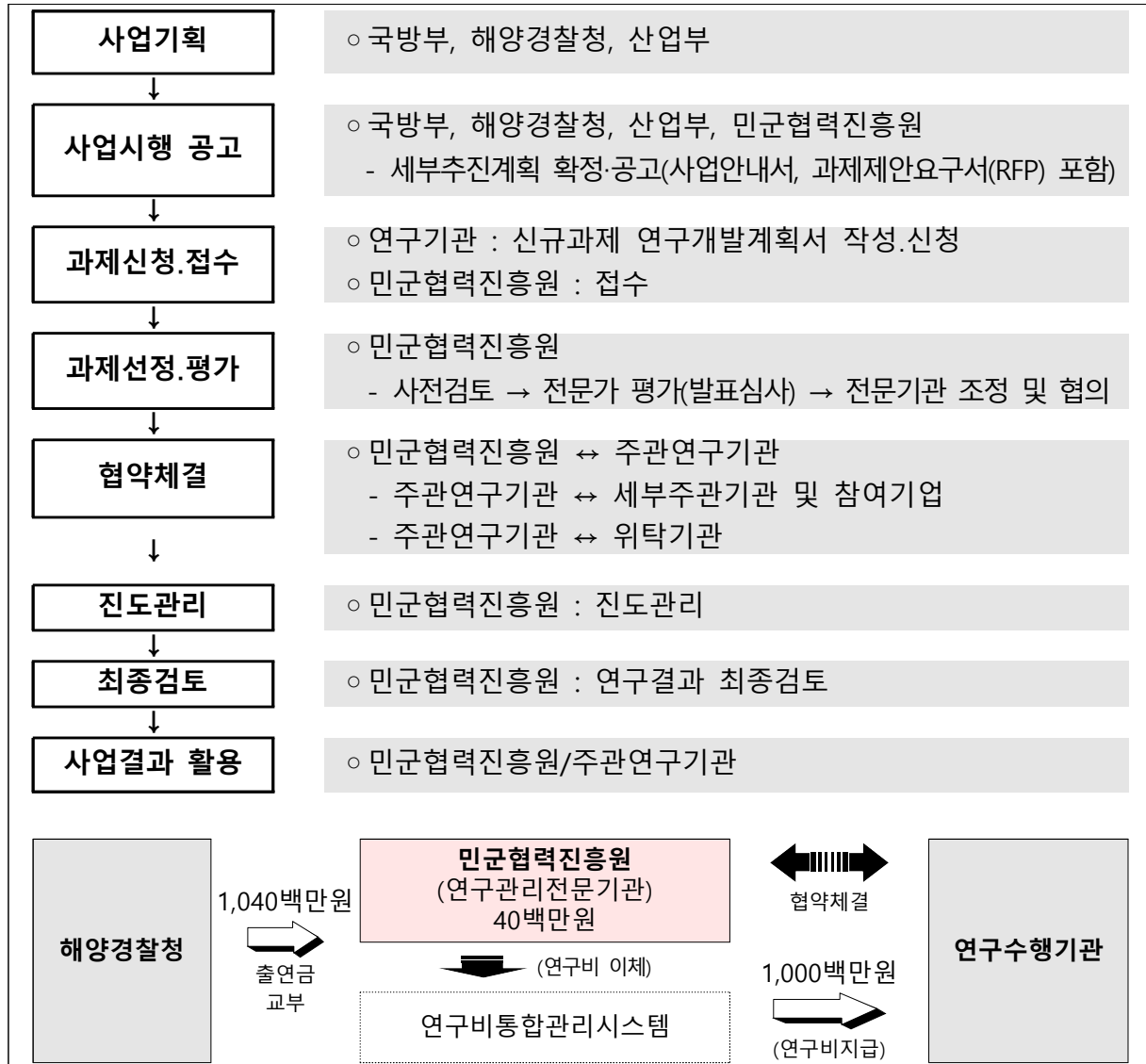
- 2019. 3. ~ 4. : '21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수요접수
- 2019. 6. ~ 8. :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선정 및 사전기획연구 추진
- 2019. 9. : 다부처특위, 사전기획연구 평가 및 공동기획 대상사업 선정
- 2019. 9. ~ 12. : 공동기획연구 추진
- 2019. 12. 11. : 민·군기술 분야별 전문위, 공동기획연구결과 평가
- 2020. 2. : 다부처특위, '21년도 민·군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최종선정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해양경찰청)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국방부, (참여) 해양경찰청, 산업통상자원부(전문기관: 민군협력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방부·해양경찰청 정비창 직원, 민간 조선소 정비창,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군협력진흥원	10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사고신속대응군집수색자율수중로봇시스템개발(R&D) (7239-618)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020	024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해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200	7239	618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사고신속대응군집수색자율수중로봇시스템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해양사고신속대응 군집수색자율수중 로봇시스템개발 (R&D)	-	-	-	3,120	2,132	2,132	순증

**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양안전 로봇 개발로 해양사고 신속대응 체계 구축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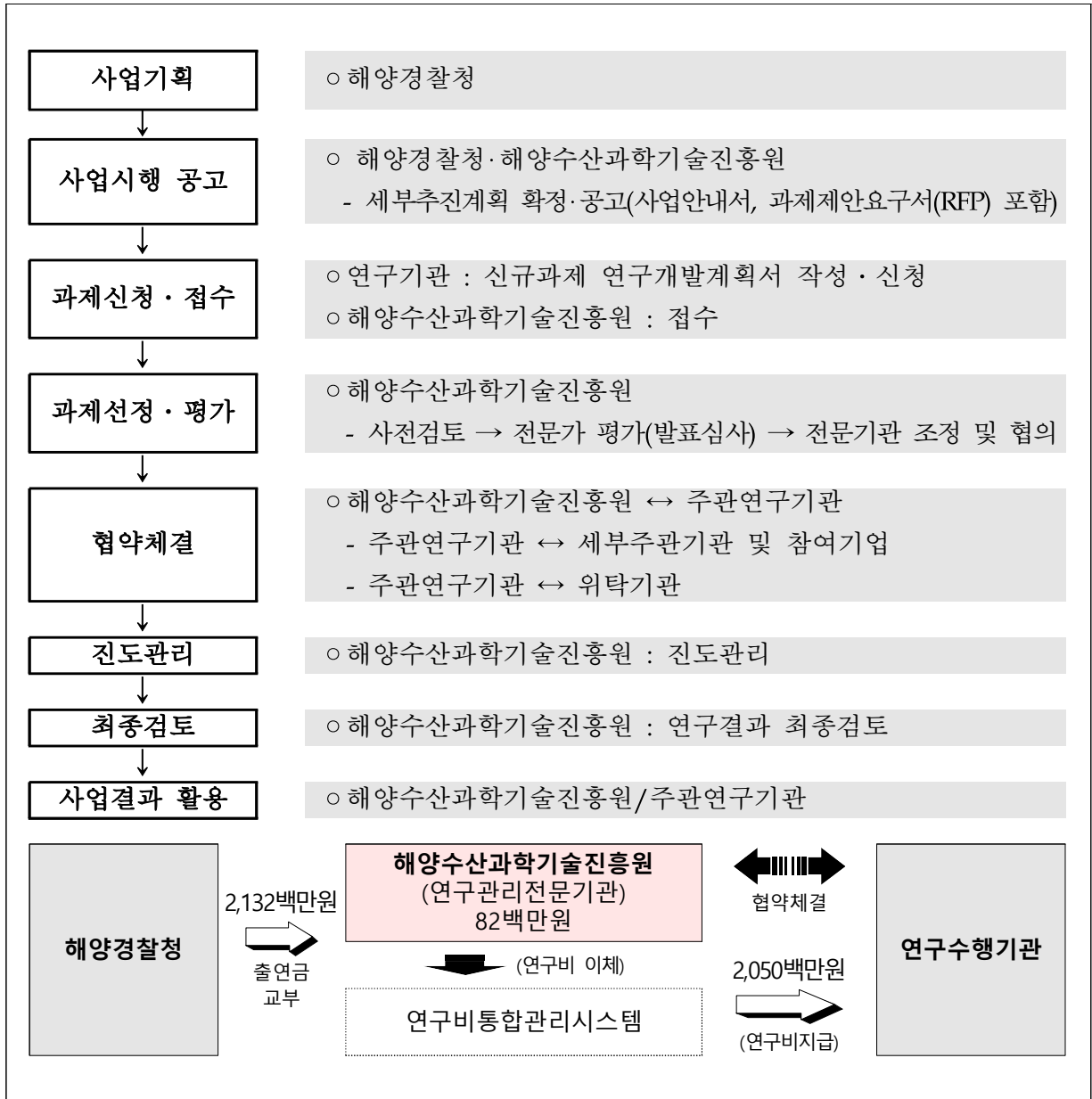
- (1차 기획)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후속 사업에 대한 기획연구(‘17.5~’18.3)
- (2차 기획) MOVE 4.0(Maritime Operative Vehicle Equipment 4.0) 로드맵의 수립과 사업의 대표 과제인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SOS(Safe Ocean Service)해양안전로봇사업’에 대한 상세 기획 수행(‘18.8~’18.12)
- (3차 기획) ‘해양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SOS(Safe Ocean Service) 해양안전로봇사업’의 내역사업 중 군집수색 자율 수중로봇 시스템에 대한 상세 기획 수행(‘19.12~’20.4)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업규모 : 1개 내역사업 1개 과제(‘21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청, 해양관련종사자, 전국민, 연구기관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00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R&D) (7239-619)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 추진단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239	619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해양경찰현장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해양경찰현장 맞춤형연구개발 (오션랩)(R&D)	-	-	-	512	512	512	순증

**4. 사업목적**

- 국민-해양경찰-연구자 간 협업하여 해양재난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하는 해양경찰 리빙랩(Living lab) 추진
-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해양경찰 단속요원의 해상진압복, 보호장비, 보호헬멧, 생체알림 장비 등에 대한 디자인·소재·정보통신(통신, 센서, S/W 등) 기술개발 지원
-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향상) 해상 구조 작업 등에 사용되는 함정 배수펌프, 선상작업복, 탐조등, 조명탄 등에 대한 해상환경에 적합한 성능개선 기술개발 지원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81조(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과학기술의진흥) 및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장)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 ②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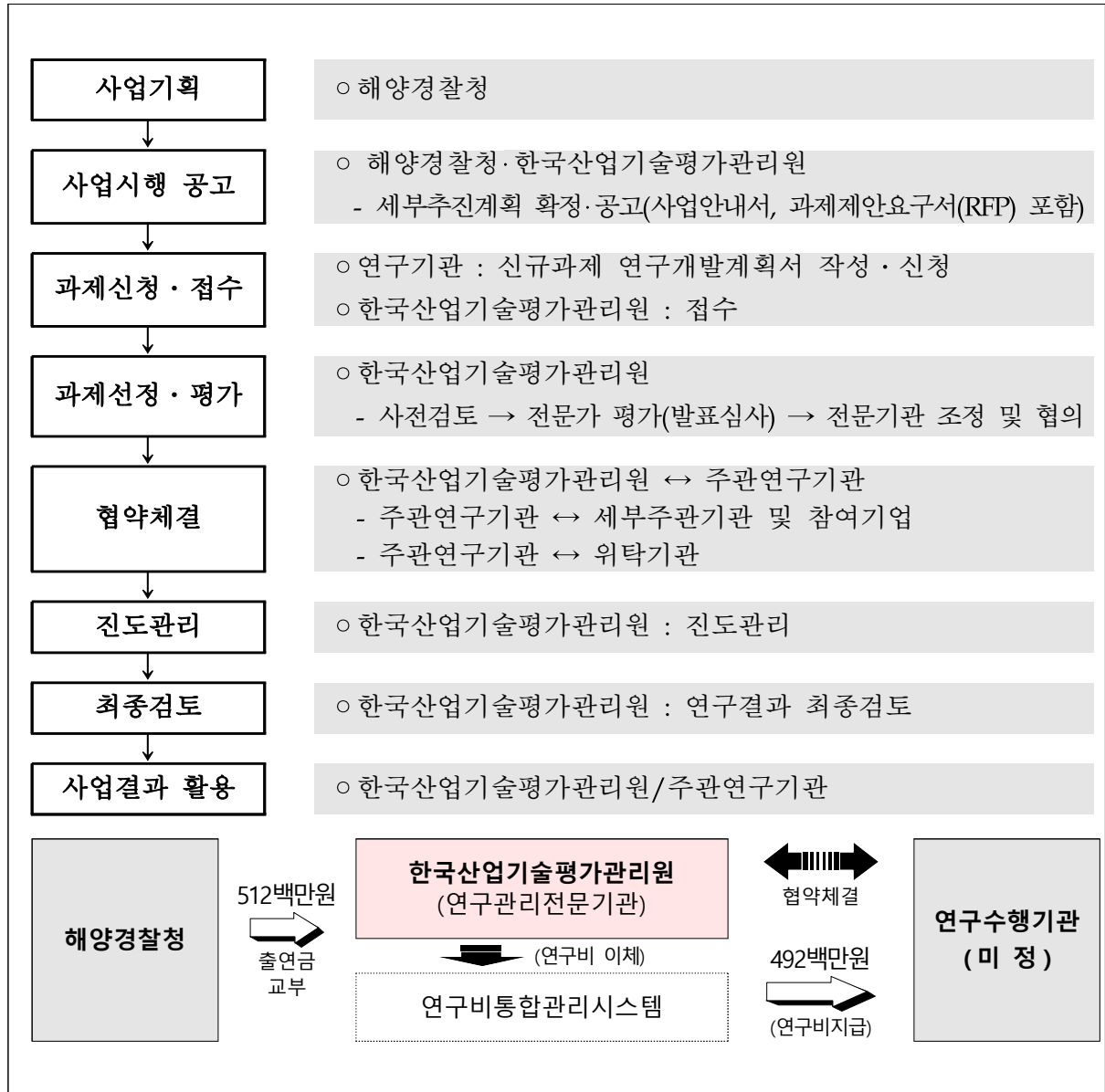
- 해양경찰 현장맞춤형 장비 개발 등을 위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신설('19.8)
- 해양경찰 R&D 리빙랩 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20.5)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규모 : 2개 내역사업 8개 과제('21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 수혜자 : 해양경찰 직원, 해양종사자 및 해양관련 연구기관·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0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R&D) (7239-65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020	025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재난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239	650
명칭	해양경찰행정지원	연구개발	정책연구개발(R&D)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정책연구개발(R&D)	293	193	193	193	183	△10	△5.2

**4. 사업목적**

- 신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해양경찰청 현안업무 관련 연구용역 지원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9조(정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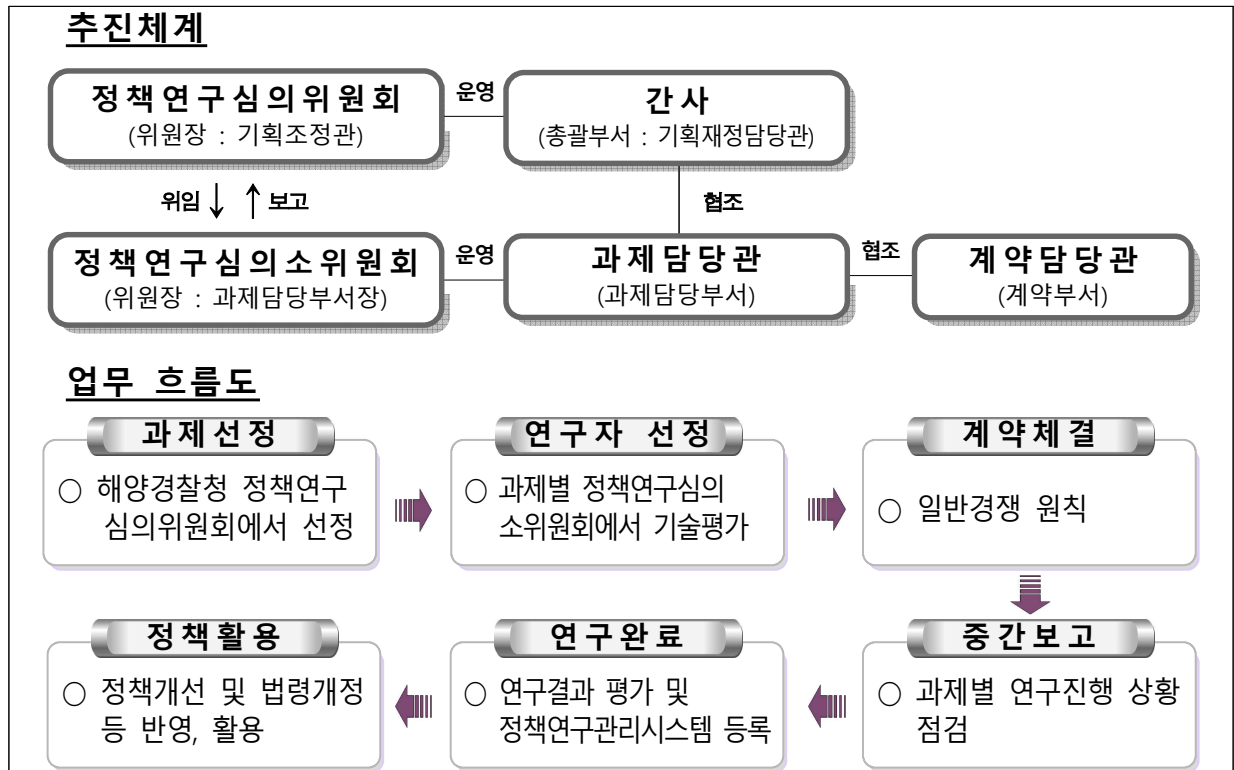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17. 7. 26 : 정부조직법 개정(해양경찰청 신설)에 따라 '18년 예산부터 국민안전처에서 사업 분리

## 6. 주요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오염예방활동 (4333-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오염예방활동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B-A)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해양오염예방활동	5,804	4,782	4,651	4,670	4,668	17	0.4

### 4. 사업목적

- (방제장비 및 물품 확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3개 방제비축기지 기자재 확충 및 해양경찰서 운용 중인 노후 방제장비 등을 대체하는 사업임
- (방제 및 예방활동 지원) 방제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형 해양환경보전 활동 추진을 위해 본청, 지방관서(지방청, 해양경찰서)의 방제·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신속·효율적인 방제 조치를 위해 체계적인 방제훈련 추진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해양오염사고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보고 등)
  -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시설의 소유자(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2. 제70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을 하는 자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 ①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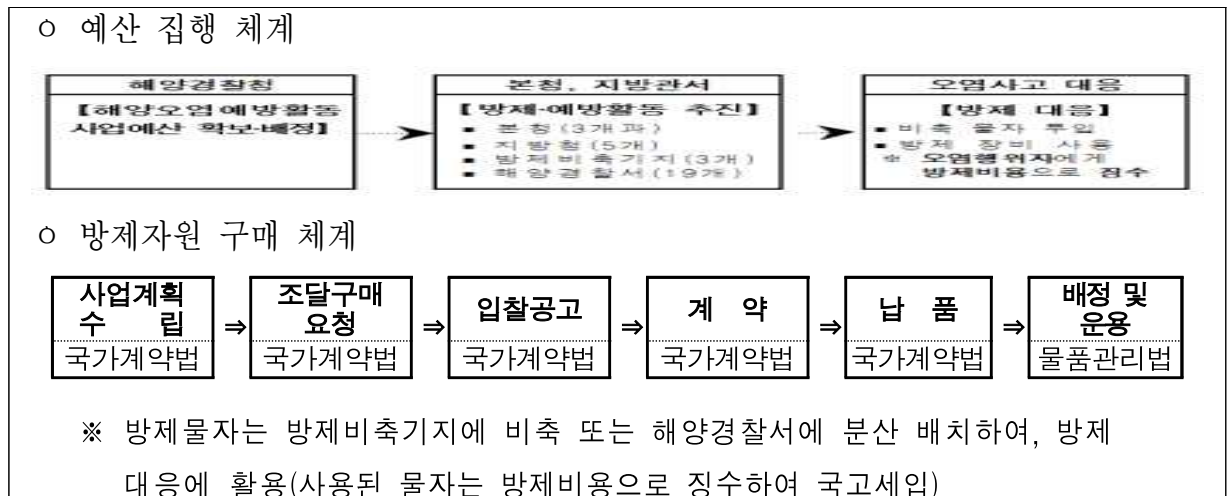
② 추진경위

- '00. 1월, 국가방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 '00. 2월, OPRC협약(기름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 '08. 7월 국무총리실 특정과제 이행계획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개선”
- '08. 11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14. 11월, 국민안전처(舊 해양경찰청) 조직 변경
- '17. 7월, 해양경찰청 조직변경, 오염방제 총괄지휘하고 지자체가 해안방제조치 시에 방제장비·자재를 지원하도록 법 개정·시행에 따라 해안방제 지원기반 마련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수산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4333-301)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4200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일반회계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3	301
명칭	해양오염관리	해양오염방제	해양화학사고대응역량강화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해양화학사고 대응역량강화	520	520	520	620	620	100	19.2

### 4. 사업목적

- (사업목적) 해양화학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및 해양환경 보호
  - (사업내용) 해양에서의 위험·유해물질(HNS) 사고 대비·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용 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현장 대응요원의 교육·훈련 등 활동을 지원
    - (사고대응장비 확보) 열화상카메라, 가스탐지기, 소석회살포기, 제독기 등 화학 사고 대응에 필요한 장비 확보
    - (사고대응자재 확보) 알콜형포소화약제(내알콜포), 화학보호복, 화학마스크, 방폭 안전용품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자재·약제 확보
    - (화학사고대응요원활동지원) 전국 27개 소속관서 현장 대응요원의 교육·훈련, 장비유지·수선 등 활동 지원
- ※ 위험·유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 기름을 제외한 독성, 폭발, 화재

위험물질로 유출시 인명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물질(ex. 벤젠, 톨루엔, 자일렌, 황산, 질산 등)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제3장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제12조(방제자원의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① 해양경찰청장과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방제조치에 필요한 방제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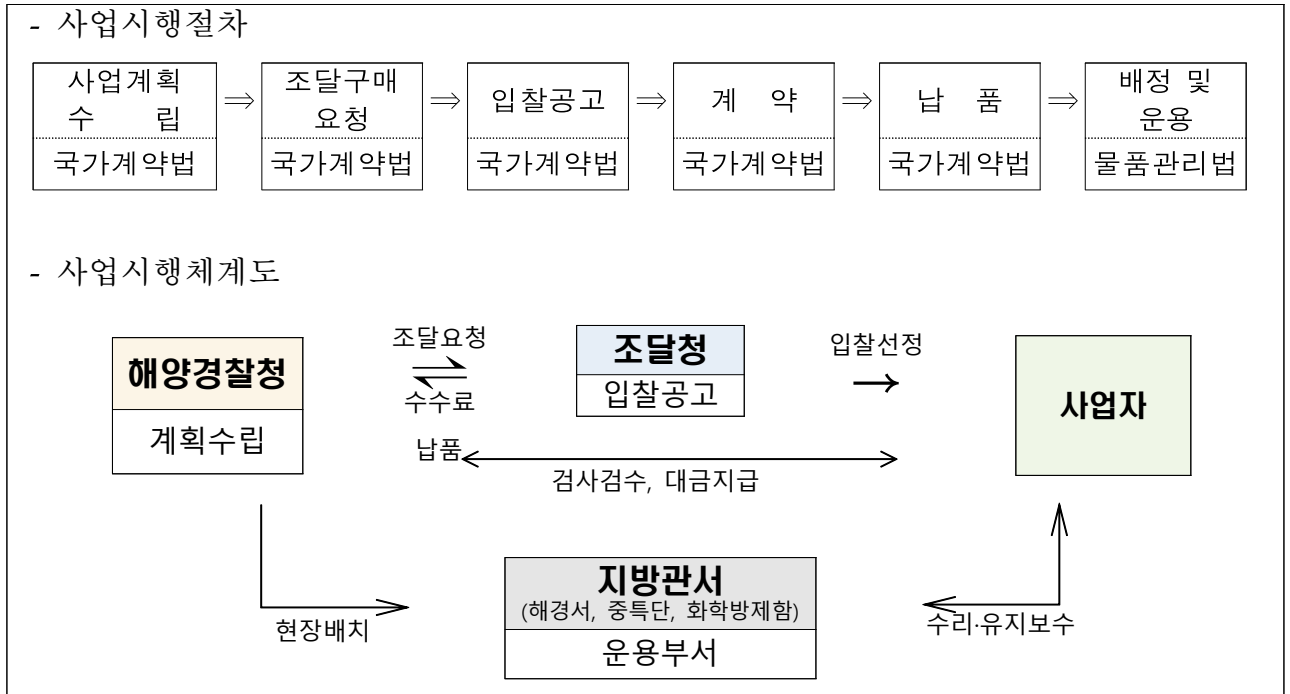
### ② 추진경위

- '06. 12월, HNS 국가/지역 방제계획 수립·시행(국가 및 3개 해역)
- '08. 1월, OPRC-HNS 의정서 가입, 국내발효('08. 4. 11)
- '08. 2월, 해양환경관리법상 HNS국가긴급방제실행계획 수립·시행 규정
- '08. 4월, 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하는 HNS 지정 고시(68종)
- '08. 12월, HNS 국가/지역방제계획 수립 완료('06년~'18년, 19해역)
- '09. 4월, 기름 중심의 국가/지역 긴급방제계획에 HNS를 포함하여 개정  
- 해역특성 정보, 사고위험평가, 방제조치 계획, 방제자원 동원 등 규정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7.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방제정건조 (4334-300)

###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		070	075
명칭					환경	해양환경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34	300
명칭	해양오염관리	방제정건조	방제정건조

###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9년 결산	2020년		2021년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방제정건조	7,558	180	3,780	9,880	9,700	5,920	156.6

### 4. 사업목적

- (유류방제정 대체 건조) 노후된 방제정을 환경 친화적 LNG 방제정으로 건조
- (사업목적) 기름 및 해상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를 탑재한 방제 전용 선박 건조
- (사업내용) 노후 방제정을 환경 친화적 LNG 추진 방제정으로 대체 건조, 복합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 오염물질 감축 및 친환경 선박 미래 시장 선도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43조의 2항(해양에서의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④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①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거나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97년, '국가방제제도개선 및 방제능력 확충방안 연구'를 통하여 국가방제능력 확보목표를 2만톤으로 설정

- '07년, 해양오염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 보완

- '08년, 총리실 주관, 해양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시 개선과제로 대형 방제정 필요성 제기

- 선령 20년이 경과된 노후 방제정 교체로 선박 안전성 확보

- '14년, 여수·부산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제기된 방제정 부족의 문제점 해결 추진

- '15년, 부산 화학물질운반선('13년, 마리타임메이지호) 충돌·화재사고 시 현장 진입 및 화재진압의 어려움에 따른 전용 선박도입 추진

- '16년 '해양오염방제장비 증장기 확보계획' 수립, 방제정 확보 목표 정립

## 6.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방제정 26척 확보 목표, 25척 배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해양수산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